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 |좌담회

9월 21일(목) 10시30분

노무현시민센터 다모여회의실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덕궁길 73
안국역 3번 출구 600M

좌 장 | **홍윤희** 협동조합 무의 이사장

발제1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조직팀장

발제2 | 서울대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

패널3 |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수정** 정책위원


패널4 |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패널5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패널6 | 사단법인 두루 **김남연** 변호사

 **YouTube**
전국장애인부모연대

| 주관 |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민주언론시민연합

 **YouTube** 본 좌담회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유튜브 채널로 생방송됩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검색 또는 @bumoyd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 프로그램

시 간	내 용	진 행
10:30-10:35	[좌장 인사말]	협동조합 무의 홍윤희 이사장
10:35-10:45	[발제1] 장애 혐오 양산하는 미디어, 이대로 좋은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조직팀장
10:45-10:55	[발제2] 참 쉽고 잔인한, 어떤 해결책에 대 하여 (별첨*)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
10:55-11:05	[토론1] 미디어는 장애를 어떻게 보도하는 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수정 정책위원
11:05-11:15	[토론2] 장애 혐오 양산하는 미디어, 나아 지지 않는 구조의 문제점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
11:15-11:25	[토론3] 보도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
11:25-11:35	[토론4] 미디어보도와 법적 책임	사단법인 두루 김남연 변호사
11:35-12:05	[플로어토론]	
12:05-12:10	[마무리]	

○ — 자료집 순서 — ○

- || 발제1 || 장애 혐오 양산하는 미디어, 이대로 좋은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조직팀장__5
- || 발제2 || 참 쉽고 잔인한, 어떤 해결책에 대하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김승섭 교수__23
- || 토론1 || 미디어는 장애를 어떻게 보도하는가?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수정 정책위원__27
- || 토론2 || 장애 혐오 양산하는 미디어, 나아지지 않는 구조의 문제점
미디어오늘 윤유경 기자__39
- || 토론3 || 보도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장예정 공동집행위원장__55
- || 토론4 || 언론보도와 법적책임
사단법인 두루 김남연 변호사__63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

-
-
-
-
-
-
-
-
-
-

|| 발제 1 ||

장애 혐오 양산하는 미디어,
이대로 좋은가?

백선영 •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조직팀장

장애혐오 양산하는 미디어, 이대로 좋은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백선영 조직팀장

매일 매일의 무력감과 공포

용인 장애 아동 학대 신고 사건이 언론에 터진 이후 우리가 마주한 것은 매일매일의 무력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2학기가 다가오는 것에 대한 공포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장애인 교육권 운동 20년, 통합 교육에 대한 가치가 어느 때보다 높아져야 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통합교육 원칙을 송두리째 뒤흔들며 분리와 배제가 외쳐지는 현실, 연일 깊은 상처로 고통을 겪는 일상 속에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마음으로, 언론인과 관련 전문가들께 모이자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제안을 드린 배경은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비단 당사자뿐만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고통과 모욕감을 야기하는 이러한 보도의 형태는 문제가 없는가?” 장애 아동의 행동을 악의적인 맥락으로 문제 삼고, 개인의 일상을 고스란히 중계하는 보도를 제발 멈춰달라는 호소, 오늘 좌담회는 이 호소에서 시작합니다.

지난 7월, 서울 서이초 교사의 죽음에 대한 사회적 공분과 함께, 자녀에 대한 정서적 학대를 의심하여 교사를 고발한 웹툰 작가 역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교사들의 안전하지 않은 노동환경의 문제는 ‘진상 학부모’ - ‘학생인권조례’ - ‘장애 학생과 부모’ 들로 호명되며 논점을 옮겨오기 시작하더니 아동학대를 고발하기 위해 녹음기를 설치한 웹툰 작가를 표적 삼은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문제는 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와 배제의 여론이 물밑듯이 부상했다는 것입니다. 곱잡을 수 없는 여론의 반응에 숨죽여야 했던 건 비단 사건의 당사자만이 아닐 것입니다.

삭제된 맥락

사람들은 어떤 사안을 두고 판단을 할 때, 각 세력 사이의 역관계 내지는 구도를 염두에 둡니다. 교육 주체라고 하는 학생-학부모-교육노동자 사이의 갈등은 사실 오랜 문제입니다. 특히 장애 학생에 대한 학대로 교사 처벌을 촉구해 온 것은 부모연대가 이전부터 해온 활동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교육 노동자들의 장애아동 학대

는 이제껏 내부에서 고발되거나 혹은 당사자의 제기로 힘겹게 법정 싸움을 벌여와도, 제대로 해결된 사안이 거의 없었습니다. 사법부가 외면하거나 교사의 거짓말에서 시작해 학교의 거짓말로 확대되는 사례도 부지기수였습니다. 부모가 갖는 일상적 불안감은 개인의 망상이 아니라 장애 아동에 대한 관심과 지원 체계가 극히 부족한 사회의 구조 속에서 형성되는 것입니다. 의사 소통이 어려운 자녀들에게서 나타나는 몸에 가해진 흔적 혹은 확연히 달라진 문제적 행동이나 정서적 반응들로 학대(에 준하는 여러 행위들)가 있었다는 정도만 알아차릴 수 있을 뿐이기 때문이죠.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사회적 약자인 아동에 대한 학대의 역사성을 고려한, 사회적으로 합의되어온 조치였던 것입니다. 아동학대처벌 특별법이나, 교육공무원법에 처벌을 강화해왔던 맥락은 이러한 구도와 역사에 대한 인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건 보도 양상

지난해 자신의 자녀를 정서적 학대한 것으로 의심되는 특수교사를 고소한 웹툰 작가의 사안이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후 나무위키 실시간검색어로 해당 작가의 실명이 1위로 오르는 등 거의 모든 뉴스 사이트에 웹툰 작가 자녀의 아동 학대 사안이 주제를 달리하며 오르내렸습니다. 해당 교사는 직위해제 된 채로 재판 중이며 교사는 훈계 차원이라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진위 여부는 여기에서 멈춰있습니다. 그러나 서이초 교사의 사망 사건과 ‘교권 침해’의 목소리가 부상하기 시작하면서 해당 사안이 미디어를 통해 기묘하게 맞물려 들어갔습니다. 공동체를 파괴한 가해자 장애 학생과 갑질을 일삼았던 유명 작가라는 구도 말고 다른 사회적 맥락은 강 그리 사라졌습니다. 구체적인 보도 양상을 살펴보겠습니다.

- 2023.7.24 특정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당 사안 노출되어 올라옴.

- 2023.7.26 주호민, ‘특수교사 아동학대 신고 논란에 단순 훈육 아니었다 (Y매체, H경제, J일보, F뉴스 등)
 - 특수교사 고발 논란에 자폐아등 등교 거부로 인한 충격이라는 보도 논조로 시작, 첫 기사들만 해도 왜 고발했는가에 대한 초점을 맞추고 있음.

- 2023.7.27 녹음 전후 상황 무시 됐다 - 특수학급 교사 경위서 보니 (J일보, H경제, S일보 등)
 - 특수학급 교사의 경위서가 공개되고 우후죽순 학대가 아니라는 논조의 보도 지속

- 2023.7.28. “홈스쿨링 자신 없어”부인의 웹툰 재조명(F일보 등), 이말년 “주호민 사건 안 타까워...기다려달라”(H경제 등)
 - 웹툰 작가뿐만 아니라 가정과 주변의 사생활까지 시선을 확대시킴.

- 2023.7.29 주호민 ‘특수교사 고발’ 의협 전회장 “특수아동들 미래에 악영향” 비판 (J일보, D일보, M일보 등)
 - 의료계의 지적까지 보도하며 사안의 당사자에 대한 사회적 영향력(압박) 확대

- 2023.7.30. 아이 가방에 녹음기 들려보낸 주호민, 후임교사도 녹취? 역고소 가능성도(S일보)
 - 당사자의 행위에 대한 여론의 판단을 노골적으로 요구하는 보도

- 2023.8.1. 초등교사노조 “교육청, 교원 직위해제 남발 사과하라”(K일보, D일보 등)
 - 교사 집단의 반발로 이어지는 보도, 교육계의 움직임을 촉발

- 2023.8.7 “주호민 아들 변호 못하겠다” 사선 변호인 이틀만에 전원 사임(S경제 등)
 - 변호사 사임은 당사자의 요청이었음에도 마치 여론이 나빠 그러한 선택을 한 것처럼 추측성 보도를 내보냄.

- 2023.8.29. 주호민 아들 학급 학부모들 “아무도 담임 안 하려 해” 분노(M신문, D일보, S경제, M경제 등)
 - 타이틀을 고의적으로 뽑은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로, 해당 장애 학생이 심각한 기피 대상인 것처럼 그려짐.

- ※ ‘주호민’ 키워드로 검색하면 총 823건 (7.26부터-9.16까지)의 검색 기사가 뜨며 Y00(69), M경제(60건), H경제(55건), F뉴스(43건), M투데이(44건), S경제(42건) 등에서 앞다퉈 해당 사안을 다루었습니다.

부분이 전체를 대체하고 왜곡된 논리가 사실이 되다

두 달 내내 지속된 이른바 ‘주호민’ 논란은 지속되었습니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다수의 경제지들에서 웹툰 작가는 자신의 자녀를 위해 교사를 직위해제시킨 진상민 원인으로 프레임되었고, 분노하는 대중들의 표적 대상으로 전락했습니다. 반대 편향의 기사들만 내보내는 선택적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웹툰 작가와 자녀, 부인 등의 가족관계와 신상정보, 주변인의 행보까지도 여과 없이 보도되기 시작하면서, 일상들이 공개될 때마다 비난 여론이 무더기로 더해지는 양상이었습니다. 눈덩이

쿨리웃 분노의 초점을 개인에게 타겟팅하며 무차별한 혐오 댓글이 양산되기 시작합니다.

<p>DY @cyl...10002 • 4분 전 통합 학급을 왜 반대하는지 잘 보여주시네요.</p> <p>👍 10 🗨 📄</p>	<p>주호민 @...1000711 • 36분 전 성기노출과 돌발행동 같은 네글잔데 타격감이 다르네요... 역시 포장이 뛰어나십니다</p> <p>👍 627 🗨 📄</p>
<p>S @...1000254 • 1시간 전(수정됨) 그렇게 귀한자식분 학교말고 집에서 홈스쿨링으로 직접 교육하는게 어떤지 싶네요^^</p> <p>👍 1천 🗨 📄</p>	<p>온다 @...1000711 • 1시간 전 이렇게 많은 댓글 속 이 댓글을 보실지 모르겠네요. 장애아를 키우는 입장에서 남기는 두리구요. 아들이 '성적병능을 감출줄 모르는 동물'로 비춰져서 속상하세요? 예, 맞아요. 어드님은 그런 동물의 상태예요. 지금. 작가님, 장애아들은 강아지 키우듯 키우는거예요. 가슴 미어지죠. 어떻게 우리 애를 개 훈련시키듯이 키우나실죠? 그래서 사랑으로 어르고 달래고 일반학급에들처럼 사회화 시키고 싶었던거죠?</p>
<p>온다 @...1000711 • 30분 전 남의 딸 쥐 패고 성희롱까지 한 아들을 위해 녹음기를 채워보내 몇시간치를 분석하고 변호사를 5명 찾아가고 경찰서에 신고까지 하는 부모라니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 대단하시다 아드님이 이 세상에서 두려워할것은 없을듯합니다 훌륭한 아들로 자라길 기도할게요</p> <p>👍 1.6천 🗨 📄</p>	<p>온다 @...1000711 • 1시간 전 자식이 한 행동들은 '돌발행동' 이라고 뭉그러뜨려서 말하고 선생님이 한 행동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학대인지 아닌지' 라고 정확히 명시 하시네요 이것만 봐도 주호민님의 스탠스가 어떤지 잘 알려 같습니다 스스로에게 당당해야 당위성을 얻는거라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안타깝게 됐네요 부디 진상과의 싸움에서 이겨내시길</p> <p>👍 2.1천 🗨 📄</p>

※ 위 댓글들은 '주호민 댓글'로 검색했을 시에 나타나는 기사로 보도된 콘텐츠 중의 일부입니다. 정제되지 않는 사회적 분노를 담은 댓글들을 여과 없이 캡처해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녀의 행동과 관련한 상담 내용 만천하에 공개, 인격권 말살

기자들은 장애 학생의 행동과 더불어, 작가 개인과 연관되어있는 이들의 행보를 끈질기게 보도합니다. 기사 자체의 시비를 떠나, 특히 심각한 것은 장애 자녀의 행동과 관련하여 상담을 나눴던 내용들이 언론을 통해 공론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해당 작가의 이름만 검색해도 '바지 내리기', '고추사타구니' 가 뜹니다. 교육자·상담자로서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들이 버젓이 언론을 통해 생중계되며, '단독' 타이틀로 언론을 통해 유포되는 동안 9살 자폐성 장애가 있는 작가의 자녀는 때리고 성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누구도 담임을 맡으려 하지 않는 괴롭치한 가해자로 만천하에 각인되었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이 장애 학생의 행동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초점 맞춘 보도는 사안에 대한 선입견을 주입시키고, 법정에서 해야 할 심판을 대중의 심판으로 대체해 버립니다.

<p>파</p> <p>"아이 첫마디가 '사타구니'"..주호민 아들 우려해 '성교육' 힘쓴 특수교사</p>	<p>사회일반</p> <p>주호민씨 특수교사 "학교서 고추사타구니 단어 사용"</p> <p>2023.08.31 09:43</p>
<p>남</p> <p>주호민씨 특수교사 "학교서 고추사타구니 단어 사용, '남근기' 같다" 우려</p>	
<p>아</p> <p>주호민에게 고소당한 특수교사 "A군 여학생 앞에서 바지 내려...2차 피해 막 고사"</p>	
<p>세</p> <p>주호민씨 특수교사, 주씨 아들 성교육에도 힘써...'고추사타구니' 단어 사용에 "남근기 같아"</p>	

공적인 인물이 개인 미디어를 활용하여 선입견 조장 - 사회·제도적 영향력으로 확대

장애를 소재로 한 이슈물이, 그 고약함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장애 학생의 교육권을 보장되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하는 공기관 교육부마저 교실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원인을 학생 개인의 행동 문제로 돌리며 갈등을 조장하였습니다. ‘장애 학생은 자신이나 타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꼬리표를 각인시켰던 교육부 장관의 워딩도 그대로 전파를 댔고, 마땅히 해야 할 신변 지원 노동을 당사자에게 모멸감을 가중시키는 방식으로 말하며 외려 교육자와 교육 대상을 혐오적인 방식으로 분리시키는 경기도 교육감의 워딩은 개인의 SNS를 통해 전파되기도 했습니다. 교육계의 수장이란 위치에서 발화되는 혐오 발언들은, 대중들에게 그릇된 영향력을 줄 뿐 아니라, 공적인 조치로 제도화되는 데에도 일조하였습니다. 8월 17일, 교육부는 특수교육대상자에 대한 생활지도 내용을 따로 구성한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안)’을 발표하면서 ‘자·타해의 우려가 있을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장애학생 등에 보호장구’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침까지 발표합니다. 이 문구는 물론 당사자 단체 등의 못매를 맞고 철회했으나, 문제 학생을 학급으로부터 분리하겠다는 조치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릇된 여론을 추수하는 정부의 이러한 조치를 교육적·인권적이라 볼 수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것일까?

피해는 매체들이 이슈 장사로 버는 이득과 정비례하며, 고스란히 당사자들에게 전

가되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선정적인 행동 묘사, 궁금증을 야기하는 미끼성 기사들의 연속, 타인의 고통을 이용하고 갈등을 조장하는 보도 양태의 문제, 이를 제 때 제기하고 싶어도 그러지 못했던 까닭은 무자비하게 양산되는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혐오성 기사들 속에서 교사들을 괴롭히는 진상 학부모 프레임으로 장애아동 부모들을 위치시켰기 때문입니다. 굳이 장애 아동의 문제로 초점을 맞춰야 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요. ‘교권 침해의 흐름’ 속에 놓인 특수 교사들의 고충을 알려내는 방식이 필요해서였을까요. 교육감까지 나서서 장애 아동은 교사와 친구들을 수시로 핍박하고 때리고 성적인 행동을 일삼으며 대소변을 보는 위험한 존재로 그리고 있습니다. 대체 아동을 괴물로 만들어서 얻는 결과가 무엇일까요?

물론 ‘장애 아동의 행동에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 피해를 입은 다른 자녀들의 인권은 없는가’ 라는 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문제는 어떻게 중재하느냐에 있습니다. 교육 기관에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당사자에 대한 행동 중재는 마땅히 교육적 관점과 지도의 방식이어야 합니다. 공기관의 개입 체계가 부재한 것도 아닙니다. 행동 문제 등 사안이 발생되면 교육청에 보고되고 권역별 행동중재지원센터의 지원과 인권지원단 등 논의를 통한 개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번 사안은 체계의 작동 자체가 되지 않았습니니다. 학교 차원에서 어떠한 중재 지원과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 역시 다뤄지지 않았습니니다. 언론은 개별 사안의 납작한 가해-피해의 구도에 빠지는 것을 넘어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체계가 작동되지 않았는가를 질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 언론의 보도 양태는 시스템 전반이 아니라 개개인의 문제와 행동들로 좁혀서 보게 하며 결국 사안 자체의 본질적 성격을 파악할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간 언론의 장애 묘사 방식

작년 드라마 ‘우영우’의 히트로 고기능 자폐 장애인들은 소위 정상성의 범주에 부합하는, 정의 구현의 사도처럼 신화화되었던 것과 대비되게 올 해 언론에서 보도 되는 발달장애인들은 사회에서나 학교에서나 흉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농후한 이들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간 언론이 ‘장애’를 다뤄온 양태는 전형적이었습니다. 물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억압들을 다루는 심층보도도 있었지만 대체로 동정하거나 이질적인 존재로서 그려지거나 기껏해야 ‘미담’ 여론의 주인공 정도였습니다.

이러한 구태를 극복하고자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은 ‘장애인 인권’의 내용으로, 각 조항마다 장애를 다룰 때의 태도와 자세, 보도상의 유의점 등이 상세히 기술되어 있습니다. 제3장의 1항은 ‘장애인이 자존감,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

당한다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입니다. 현재의 보도 양태는 정확히 이에 반해 이뤄지고 있습니다.

날낱이 파헤쳐져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사적인 복수와 보복 심리가 횡행하는 사회적 위기 현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여론에도 반영되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을 심판대 위에 올리고 조리돌림하는 댓글 문화는 오랜 문제이지만, 장애 아동과 그 가족이 표적이 됐다는 점은 매우 심각하게 보입니다. 다시금 묻습니다. 대체 날낱이 파헤쳐져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아동이 가진 장애의 특성인가요. 아동의 가족들이 보내는 일상인가요. 혹은 주변의 행보인가요. 아니면 장애-비장애 통합교육 체계가 엉망인 교육의 현 주소이며, 장애 혐오가 만연한 사회의 풍경입니까.

동료 시민으로서 살아가는 방법, 우리가 요청하는 것

발달장애인 부모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은 사회적인 시선입니다. 언론은 가장 중요한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그것은 동료 시민으로서 발달장애인과 비발달장애인이 함께 살아가는 방법을 묻는 것입니다. 현재의 보도 양태가 촉발시킨 사회적 여론은 발달장애인 부모를 위축시키고 자녀의 행동을 혐오 행동으로 부각시키며 사회에서 영원히 배제되어 살라는 경고에 지나지 않습니다. 혐오 행동을 일상적으로 일삼는 발달장애인과 부양 책임이 있는 그 가족이라는 프레임은 세상으로부터의 고립과 더불어 동료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해 너무도 많은 것들을 감수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일상 속 불안들을 견디며 살아가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의 마음을 영원히 얼어붙게 만들고 있습니다.

‘장애’를 이해한다는 것은 평생에 걸친 과정이어야 합니다. 주변의 증언이나 단편적인 행동으로써 촉발되는 사건들만 보고서는 결코 일반화할 수 없는, 한 인간이 보이는 의사소통과정, 감각 수용의 정도, 행동과 정서적 반응 등에 대한 총체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이를 거부해온 사회를 문제 삼는 방식이 아니라 장애를 혐오하며 사회 구성원들을 갈라치기 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언론의 모습을 이번 사태를 통해서도 생생히 목격하고 있다는 사실이 참담합니다.

당사자 단체로서 향후 대응

2016년 제정된 발달장애인법 제5조의2, "국가는 발달장애인에 대한 차별, 편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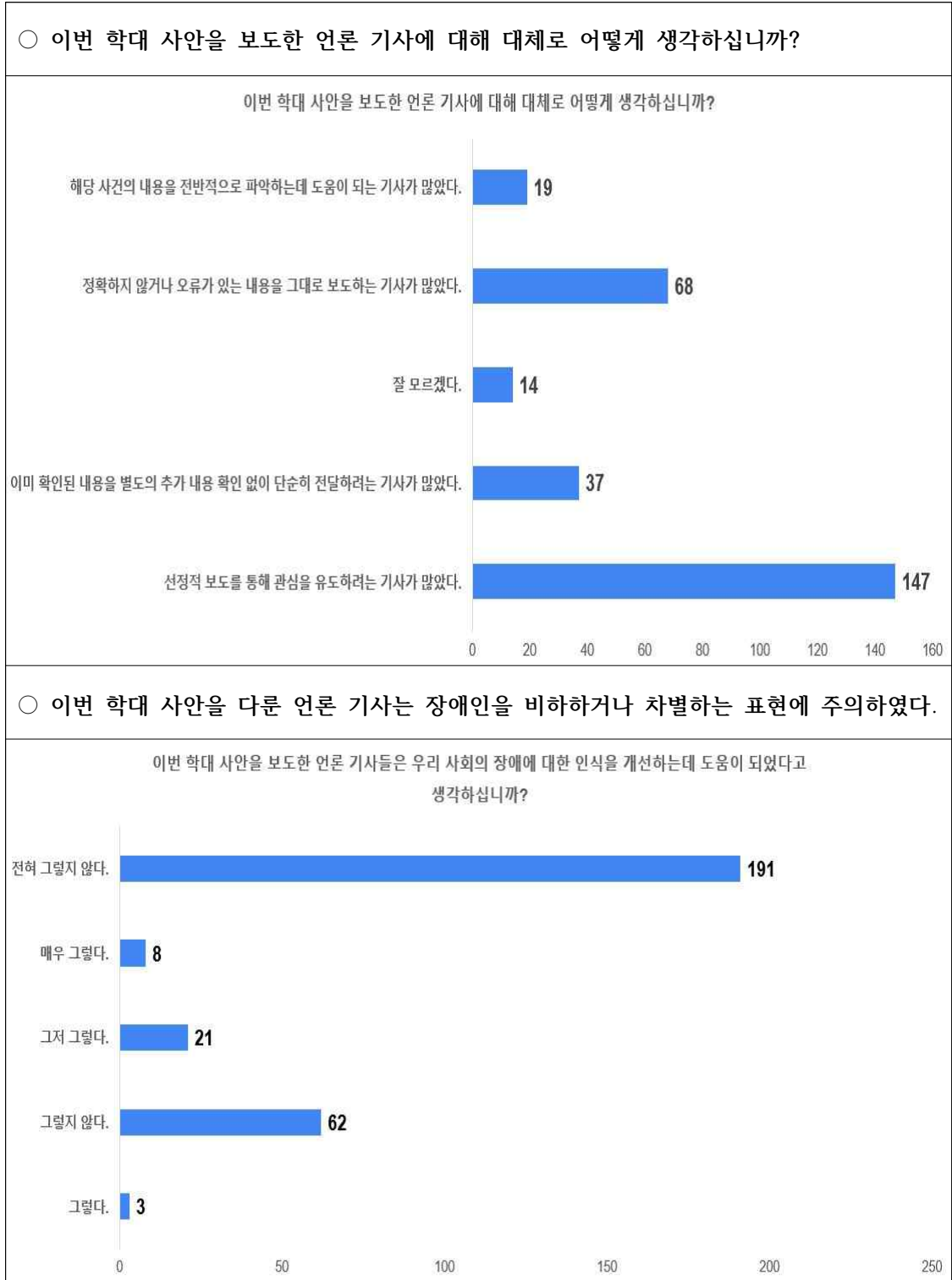
학대의 예방과 방지 등에 관한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방송법에 따른 방송편성책임자에게 배포하여야 한다” 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달장애인 학대 문제로 재판 중인 사안마저 한 쪽으로의 여론 몰이로 대중들의 심판을 촉구하고 있는 현행 보도의 실정에서, 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회적 책무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는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로써 발달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만연한 사회에 언론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역설하며, 지속적으로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물을 예정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후 장애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거나 왜곡 보도가 나올 때마다 다음과 같이 대응할 것입니다.

- 기사의 정정보도를 촉구하고, 해당 언론사의 공식 사과를 요청할 것입니다.
- 지체 없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할 예정입니다.
- 혐오 표현에 대한 고소·고발 등 법적 조치들을 조직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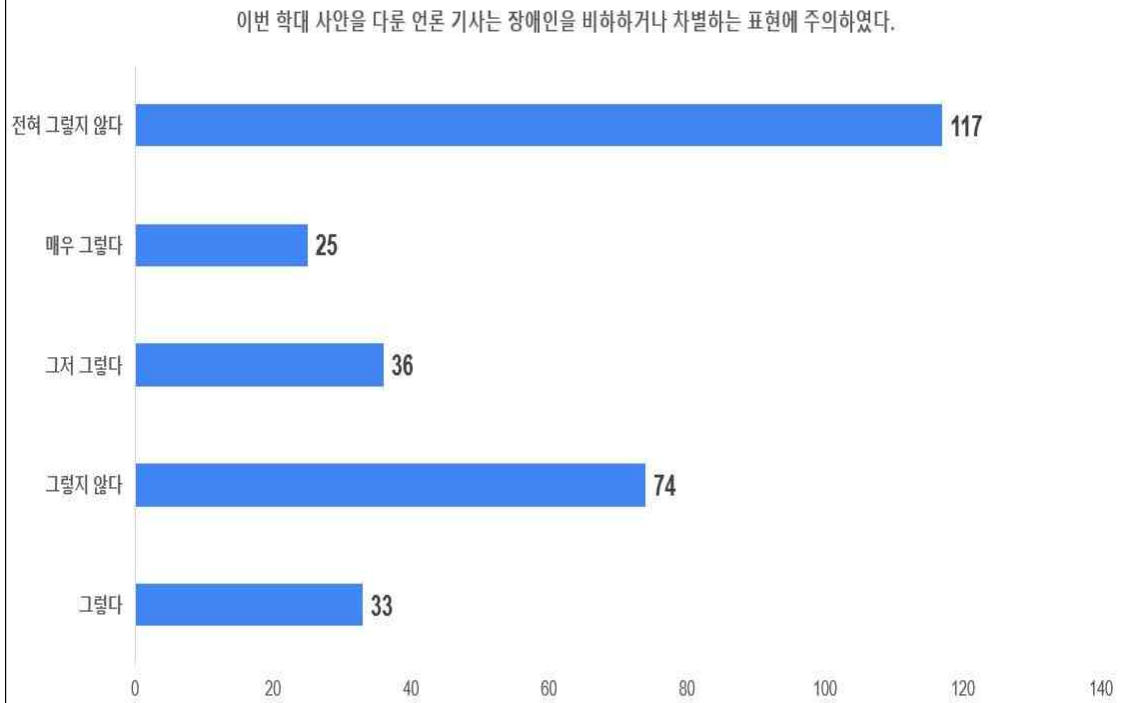
보다 근본적인 성찰과 모색 등이 오늘 좌담회에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참고. 용인 장애아동 학대 신고 사건 보도에 대한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의 인식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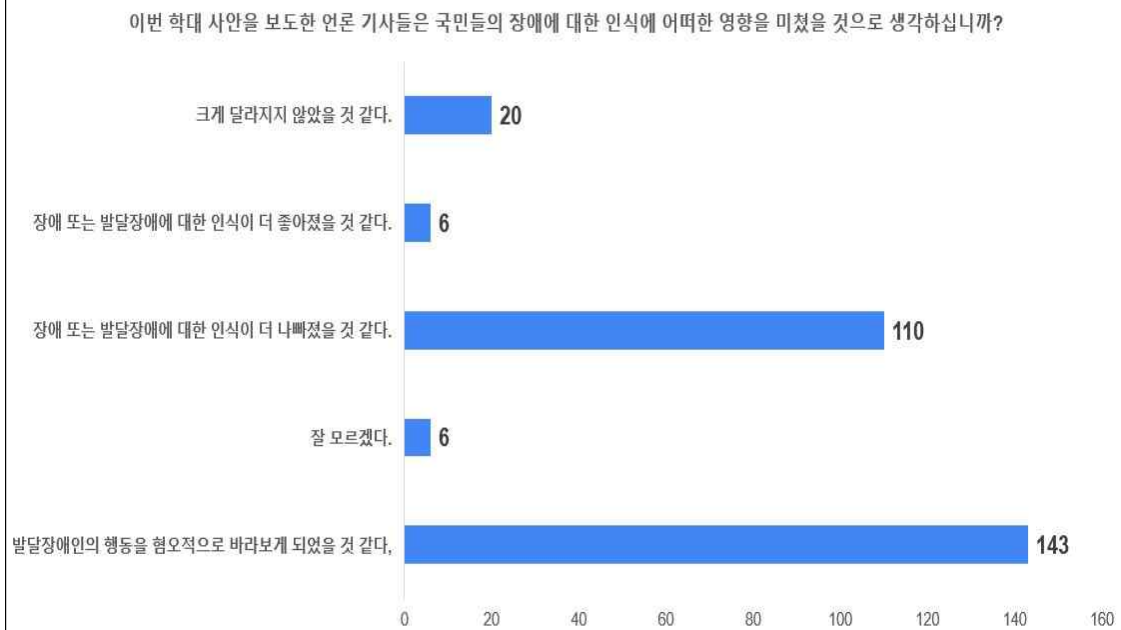
(2023.9.15.일부터 2023.9.18.일까지 285명의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원들이 응답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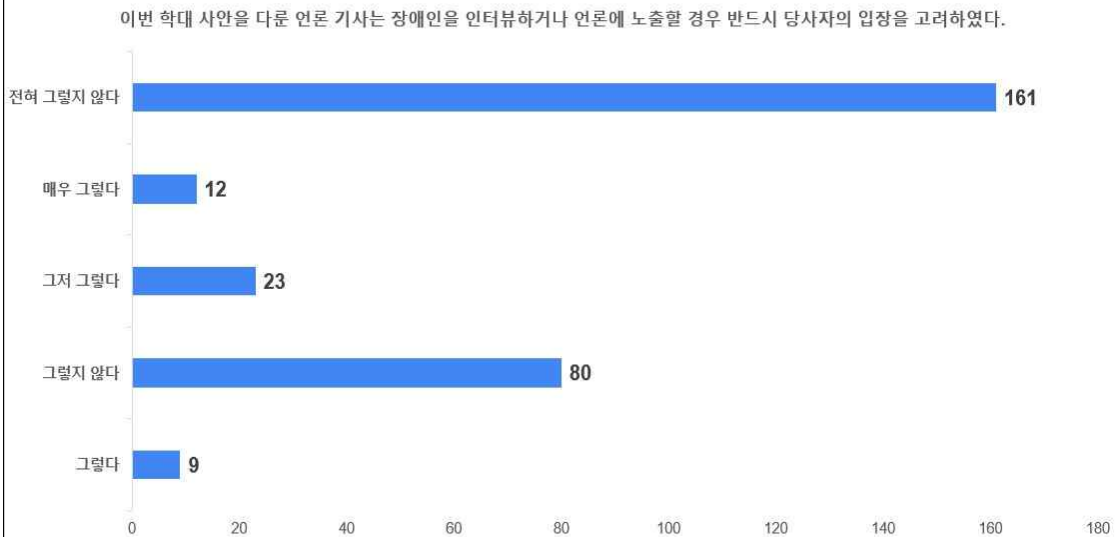
○ 이번 학대 사안을 다룬 언론 기사는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하였다.



○ 이번 학대 사안을 보도한 언론 기사들은 국민들의 장애에 대한 인식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 이번 학대 사안을 보도한 언론 기사들은 우리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번 학대 사안을 보도한 언론 기사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 언론은 반성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경제적인 것을 넘어 국민 의식도 높아져야 하는데 사람을 바라보는 인식을 100년은 더 퇴보시켰다. 언론이 바른 역할을 하지 못해 그 피해를 국민이 봤다
- 사실에 입각하지 않고 장애의 이해 없이 떠도는 이야기만으로 쓴 기사가 정당한 언론인지 묻고 싶다.
- 언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 신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 장애 학생들이 물리적인 통합에 그친 환경에서 배재당하고 차별당하는 문제와 행동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공교육의 역할을 짚어주기를 기대합니다.
- 쌍방, 상대가 있는 사건 등의 내용은 쌍방 모두에게 진위, 관련 정황을 확인하고 기사를 써야 정당한 기사, 팩트, 공정한 기사가 된다고 봄. 이는 기자,언론의 사회적 가치임
- 언론의 보도 행태의 민낯을 본 것 같고 그로 인해 유발되는 여론의 방향성이 무섭기도 하고 화도 나고 복잡하기도 함. 제발 진실을 보도하고 보도 전엔 취재를 하고 보도하길.... 인용보도 그만하고
-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성향을 제대로 알고 장애에 대한 인식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 져야할 사람은 기사를 쓴 분들일 것 같네요! 그럼 최소한 편파적인 기사는 나오지 않겠죠.. 장애라고 무조건 용서해야 되느냐가 아니라 적어도 무조건 가해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저런 기사는 장애 혐오를 선동하는 행위입니다.
- 이번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발달장애 학생의 부모들이 파렴치한처럼 느껴졌다. 문제있는 아이를 낳아놓고 부모의 의무는 다하지 않고, 아무 죄없는 선생님들을 못살게 구는 그런 파렴치한 말이다. 우리는 장애 자녀를 기르면서 누구보다 공부하고, 고민하고, 돈을 투자하고 자녀를 키웠는데 안하무인으로 선생님들을 괴롭히는 사람들로 매도하는 언론 기사를 보면서 가슴이 무너지고 좌절하였다.
-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표현하려고 한 비언어적 메시지를 이해하고 명확한 취재와 보도를 해주세요
- 비장애인이 배우는 방식으로 가르칠 때 배우지 못한다면 장애를 가진 학생이 배울 수 있는 방식으로 교육이 제공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 의학전문기자처럼 장애전문기자제도가 생겼으면 한다.
- 중재하는 정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모든 장애 학생들이 학급 학교에서 부적응 하는 것은 아니다.. 전반적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있는 내용과 향후 대책이 없었다는 것이 매우 유감스러웠다.
- 생각 없이 옮겨 작성된 기사들로 인기 기사는 됐나 모르지만 한 가정뿐만 발달장애 모든 가정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야 할 사람들이 되었다.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진짜 해결해야 할 사안이

<p>무엇인지 그 속내는 없고 표면적인 부분만 드러냈다. 내가 쓰는 기사가 누굴 죽일 수도 살릴 수도 있음을 명심하고 기사를 써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이 나빠질까 두렵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로의 입장에 대한 견해로서 이슈화가 많이 된 것 같고 국가의 제도로써 개선되고 보장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할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편파적 보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현장의 문제점을 파악해야 하는데.. 지나치게 개인의 문제로 치부된 것이 안타깝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혐오 멈춰주세요. 장애인도 사회에서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존재임을 잊지마시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당사자와 부모에 대한 혐오를 조장하고 강화하는 언론보도에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언론은 반성하고 개선 해야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은 봤을 때 선생님도 힘들었겠지만 장애를 가진 부모로서 더 맘이 아프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극적인 보도로 발달장애인과 그 부모에 대해 혐오감과도 같은 감정으로 분노섞인 댓글을 쓴 사람들을 대하며 장애인식에 대한 생각이 점점 퇴보함에 걱정이 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사의 목소리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리고 인간에 대한 예의와 품위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고려 및 배려 없이 혐오와 자극이 가득한 기사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작금의 현실이 매우 비통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전혀 모르는 기자들이 기사를 무분별하게 생산함으로써 발달장애인의 모든 행동에 대해 혐오와 차별의 벽이 더 견고해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의 이해가 전혀 없이 그 행동에만 집중하다보니 비장애인의 입장에서 전혀 이해되지 않고 이상하다고 여기면서 함께 살아갈 수 없는 존재로 비춰진거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픡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떤 관점으로 다하느냐에 따라 다르게 느낄수 있는 함께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이런. 관심에서 다양한 발달장애인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도 여러분의 자녀와 마찬가지로 소중한 아이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 자살 사건 이후로 무차별적으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중 우리 아이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저 사람들의 관심거리로 전락시키는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지 말아주세요. 이 사건들 이후로 우리 아이를 데리고 외출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워졌습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하면 잘키워 사회의 일원으로써 살아갈 수 있게 할까 하루하루 걱정으로 살았는데 제발 우리아들을 사람으로 좀 봐주세요 그저 그것 뿐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너무 이슈에 몰입한 내용으로 보도되므로 장애인에 대한 편견만 더 심어준 것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의 잘못이 분명한데 고소가 잘못된 것처럼 보도되고 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와 학부모, 장애우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 분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도적 뒷받침은 물론이구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식개선에 대한 언론인의 의식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교사든 일반교사든 마인드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아이들도 온실에 화초처럼 귀하게 너무 귀하게 부모가 케어하다보니 교사직도 힘들음 이해합니다 더군다나 소통도 힘든 장애 아이들을 케어하고 교육시키기란..장애 아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공부해도 사람인지라 힘들텐데 그마저도 부족해 보이는 교사들도 많은듯 해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일들이 많은것 같아요 교사교육과정에 장애아동 인식교육이 필수교과목으로 정해져서 특수교육선생님만 배울것이아니라 일반교사들도 배워야 하는 필수 과목 으로 바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러 장애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는 시선에서 문제 제시 또는 해결 방안이 바르게 나올 수 있을까 의문스럽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가 더 힘든 나락으로 빠지게 만들었다. 장애인학생도 교사도 부모도 안심할 수 있는 촘촘한 시스템과 제도의 변화가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언론과 방송은 구별하고 나누는 차별을 더 커지게 만들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발 정확한 정보 좀...선정적으로 보도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보도해도 감사할듯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더 이상 장애인들이 한 명도 피해보지 않게 국가가 책임지고 장애인 입장에서 한번더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다 가져주었으면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에서 특수학급 공부를 해야 하는데 홈스쿨링을 꼭 해야 되는것도 아닌데도 교사가 너무나도 지나치게 언론사 보도가 되는거 같아서 좀 짜증나는거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도 인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는 죄가 아닙니다 · 장애인이 일반 학교에 다니는 게 죄인 것처럼 부정적인 여론을 너무 많이 만든 것 같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숙한 언론, 책임 있는 언론, 양심적인 언론이 되길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도 편견을 가지고 보도하지 말아주세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자의 윤리를 다시 한 번 생각해보고 기사를 썼으면 좋겠고 자신이 쓴 기사에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 엄마로 정말 처절한 마음입니다. 선진국으로 나아가려면 장애인에 대한 바른 이해와 협력이 필요한데 요즘은 거꾸로 가는 것 같아 참담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순한 설문보다 진상 파악을 위한 양측의 심도 있는 면담을 통해 사실과 다른 면이 있다면 언론에 유포할 필요가 있다. 싸움이 아닌 장애를 담보로 권리를 주장하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없으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작 이 사태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다루는 언론사는 소수였다. 인권감수성이 없이 클릭장사에만 관심이 있는 언론사들에 집단소송이라도 내고 싶었다. 장애인에 대한 혐오만 생산해낸 언론사에 법적책임을 물을 수 없을까? 그렇지 않으면 이런 행태가 반복이 될 것이고 또 다른 참사를 가져올 것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가족들이 다같이 차별적이고 혐오적인 언론 기사를 인권위에 진정서를 내고, 명예훼손 부분에 대해서 집단소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설문의 이유가 된 사건의 피해 아동의 건강과 안녕을 걱정해주는 제대로 된 기사 하나 정도는 볼 수 있는 사회 구성원이고 싶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명인의 자살을 보도할 때도 조심하듯이 기사 한줄 한줄의 무게를 생각하며 작성해야한다고 생각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의 지나친 행동에 대한 문제제기는 당연할 수 있지만 아이의 장애를 이해 시 설명이나 편견에 대한 우려가 전제된 가운데 기사가 작성되어야 했다고 생각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 덕에 발달장애 아이들 전체를 잠재적 범죄자로 만드는 일이 벌어졌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에서 자극적인 기사들이 많이 나가 우려스러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는 기사는 없도록 언론들은 보도에 신중하기를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 확인이 되지 않고 문제 제기만 해서 선동하는 듯한 기사들이 대부분이고 재판 중에 있는 교사의 일방적 주장을 퍼 나르고 교권 강화라는 사회적 이슈를 이용해 장애아동의 가정이 너무 위태로워지는 상황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혐오를 부추기는 자극적인 내용 위주로 보도한기사가 많은 반면 통합교육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담긴 기사를 찾아보기 어려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자극적으로 조회수만 늘리려는 기사와, 이로 인한 장애 혐오에 대한 댓글들로 상처받았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작 발달장애아동의 지원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다 장애학생의인권,교육권에는아무도관심이없다 학교와교육청은무엇을하고있었나?!!! 특수교사와 학부모의 문제로만 국한시키고 있다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그렇게 뿌려도 되나, 장애 자녀를 둔 부모에 대한 마녀사냥이 지나치다 우리나라 일부 언론들 참 비열하고 저렴하다 언론인들 장애이해교육100시간이상 필수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 들어야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상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털어놔서 언론이 무섭다는 생각이 든다. 장애 아이를 선생님에게 맡기고 어찌 지내는지 알 수가 없어서 항상 조심스럽고, 걱정스러웠던 지난 날들이 생각난다. 용인 부모님도, 그 선생님도 참으로 안 되었다. 서로간에 소통이 안 되었던 것이다.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그 부모에게만 질타가 쏟아지고 일반인들은 장애인과 그 부모에 대한 인식이 많이 나빠질 것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세히 파악조차 하지 않고 제목만 따다 붙인 기사로 기사 가치도 없다고 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대 사안을 보도한 기사에 쌍방 입장에 대한 정확한 의견이나 상황 묘사가 부족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더 편견을 주는 것 같아서 아쉽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적이고 세밀한 취재보다는 선정적인 표현으로 기사 띄우기에만 몰두하였다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며 정부의 교권 확립 정책과 맞물려 이를 동조하려는 편파적인 면이 다분하였다고 보여집니다. 전문성을 띤 객관적 관점이 아닌 떠서 붙이기식의 천편일률적인 내용으로

<p>기사를 썼으며 아울러 선정적인 표현으로 언론사끼리 경쟁하는 모습도 보여졌습니다. 언론으로써의 본분을 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 정권과 여권 등에 우호적이며 동조하는 언론은 그러한 몰지각한 행위를 멈추었으면 좋겠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학생 부모가 한 행동은 대다수인데 유명인의 장애자녀라는 이유로 중점보도로 일반부모는 묻혀버렸으며 사회적약자의 잘못은 크게 부각되어버린 언론의 자세가 이해할수없다 약자에 대한 인식개선이 되어가고있었는데 이번일로 맘이 찡찡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드러난 사실과 그 이면에 감춰진 진실을 객관적으로 보도해주십시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수인의 이해도가 전혀 없기에 배려는 물론이고 애초에 시작된 부모의 불안감은 무신한채 취재한 그 시점만 인지하고 기사화된 언론의 큰 실수라 생각이 된다. 저학년의 부모의 마음과 장애 자녀의 현실적 상황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은 이러한 사회적 상황에 언론은 전혀 공감과 배려가 없음을 통탄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도 없는 자가 기사를 본인의 잣대로 표현한 방식이 거부감으로 느껴졌고, 이러한 기사때문에 비장애인들의 장애인식이 크게 퇴화되거나 저하됐을거라는 생각이 들어 매우 불쾌한 마음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령기를 준비하는 미취학 장애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제가 학교를 다닐 때는 장애친구들을 피하거나 괴롭히거나, 이 둘뿐인 선택지를 안고 살았는데 우리 아이가 살아갈 세상에서는 장애 친구를 피하지도, 괴롭히지도 않았으면 좋겠는 마음이 앞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비장애 친구들과 함께 지내야 하는데, 이번 사건을 지켜보며 '장애아들은 모두 특수학교로 보내라', '학교보내지마라.' 등의 댓글들을 보며 아이를 세상에 내보낼 준비를 하고 있는 엄마 입장에서 너무나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우리 아이는 사람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장 선봉에 나서야 할 언론인의 장애인식개선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하나로 모아 힘을 합쳐 목소리를 더 크게 모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도 국민의 한사람이며 장애인과 함께 잘 살수 있는 사회가 성숙하고 잘 사는 사회입니다... 사건이 벌어졌을때 어떻게 해야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되짚어 봐야 하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실 듣고 싶지 않을 때가 많다 어차피 언론보도 나오면 편파적으로 하든 안 하든 장애인 관련 뉴스는 장애당사자들과 가족들을 부담스럽게 만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아이와 앞으로 살아갈 날이 무섭고 힘들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이 혐오 대상이나 차별해도 되는 국민이라고 비장애인들이 생각할 거 같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희수를 옹호하기 위한 자극적인 단어에 초점을 맞춰게 아니라 그 사건의 본질을 파고 기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발 한 가정을 마녀사냥하지 말아주세요. 이미 그 가정은 평범하게 살 수도 없고 힘들게 지내고 있는데 언론의 태도로 더욱 더 힘든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가정이너가될수도내주변사람이될수도있다는결국생각하면서기사를써주세요.제발부탁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아동의 이해 부족 및 자극적인 부분의 기사 인용으로 인하여 모든 장애 아이들이 민폐만끼치는 대상으로 인식될 수 있게 언론을 조장하였다고 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번 사건의 아동과 비슷한 초1, 자폐성장애 남아이고 어려운 행동을 하는 아이의 양육자로서 언론 기사를 접하며 매일같이 억울함과 무력감,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분명 사건은 특수교사의 아동에 대한 학대 여부가 쟁점인데 기사는 운동 아이의 어려운 행동을 자극적으로 묘사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그 어려운 행동의 원인이 무엇인지조차 알려주지 않으며 아이를 사회에서 분리시켜야하는 괴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에 동조하는 대다수의 비장애인들에게 잘못된 내용이라 항변할 수조차 없게 쏟아지는 기사와 댓글의 비난은 부모로서 이 사회에서 내 아이를 지켜낼 수 없을 것 같다는 무력감을 주었습니다. 심지어 한술 더떠 발달장애 학생들의 어려운 행동을 자신들의 대단한 사명감으로 받아내고 있다는 특수교사들, 분명 정서학대의 언어임에도 불구하고 교사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 했겠냐며 내편이라 옹호해주는 교사와 관련 전문가들을 보며 심한 배신감과 함께 공교육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가 있고 어려운 행동을 한다고 하여 무시되어야 할 인권은 없습니다. 말살된 해당아동의 인권에 대한 책임은 무분별하게 보도한 언론에 1차적으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식있는 언론이나, 트래픽 장사치냐는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언론인들의 자성의 목소리가 들리기를 기대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유형에 따른 특성도 이해하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성적인 것으로만 내세워 선정적으로 제목, 기사를 내는 기자들이 부끄럽다 애써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우리 가정이 와르르 무너지는 느낌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보도인 만큼 더 세세히 살피고 정확한 맥락을 짚어주면 좋겠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년 일을 기사화하여 마치 최근이슈(서이초)를 희석시키는 일로 보여졌다. 기사 아래 달린 댓글에 발달장애인을 예비 범죄자 취급하고 사회에서 격리해야될 존재로 부정적인 반응이 많아 일반초 특수반에 다니는 아이를 둔 입장에서 개학하고 학교를 어찌 보내나 통합교육에서 배제될까 겁이

<p>났다.</p> <p>일반아이 키우는엄마 VS 장애아 키우는엄마, 경증 장애아 엄마 VS 심한 장애아, 특수교사VS학부모 대결구도를 만들어 놓고 댓글로 싸우고, 서로 상처주고, 안 좋은 인식만 남겼다.</p>
<p>•대중은 장애 이해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데 바지를 내렸다 성기를 노출했다 등의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여 발달장애 아이를 꼭 성범죄자 취급하듯 언론에 노출시키는 행태에 너무 화가납니다.</p>
<p>•모든 사건에는 상반된 상황이나 의견이 있을텐데 일방적인 방향의 보도만 있음</p>
<p>•조회수 올리기 위한 자극적인 기사 쓰지 말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일부 기사를 제외한 대다수의 언론 기사에 의해 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비난만 더 증폭되었음.</p>
<p>•단순히 고소 사건에만 중점을 두고 어느 한쪽에 편파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듯해 많이 우려스럽다. 언론의 파장 효과를 생각한다면 좀 더 거시적인 시선으로 봐야 하는 것 아닌지..누구 하나를 매장하려고 하는 건지 의문스럽다.</p>
<p>•장애인의 대한 인식과 이해 부족으로 오히려 혼란만 야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단지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왜 그렇게 행동했는지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왔는지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이라서 모르는 게 아니라 귀로도 듣고 다른사람들의 시선이라는 것도 있을텐데 그 아이의 자존심마저 무너져버리는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은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잘못되었는지 알려주면 충분히 고쳐질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선생님이라는 분이 아이에게마저 너무 무시하는 발언과 사회로부터 더 부각되게끔 만들었다는 것이 너무나 화가 납니다. 우리 아이들도 세상에서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할 아이들인데 그것마저 더 힘들게 만들어 놓았다는 것에 너무나도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p>
<p>•정확한 자료수집, 인식,조사를 한후 기사를 써주세요</p>
<p>•하나의 사건을 마치 전반적인 성향인 것처럼 보도함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이 사건을 빌미로 함께 엮어서 가려는 또 다른 교육 현장들의 행태가 참으로 가슴 아픕니다.</p>
<p>•너무 편파적인 보도이며, 서이초 사건을 덮기 위한 의도적 보도로 생각한다. 장애아는 언제나 인권유린을 당해와도 표현을 할 수가 없고 늘 묵인 되어 왔는데 한 번 고소 한 걸로 장애 부모들의 갑질이라고 몰아가기에는 역지가 있다고 생각한다.</p>
<p>•그 누구든!! 사회적 약자에게 힘을 보태주지는 못할망정, 더 고통은 보태진 맙시다!!</p>
<p>•팩트체크하고 부모와 선생님 기간질 그만하시고 행정적 문제개선에 대한 기사 좀 다루세요 그래서 기레기소리 듣는 겁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보호자 입장에서도 얘기하세요. 자살하는 게 선생님들이 많을까요 장애 가족들이 많을까요 팩트 구별하시라고요</p>
<p>•기사를 쓰기 전에 사건의 전후를 확인하고 가만히 있어도 차별 속에 사는 장애인·부모를 두번 죽이지 말아 달라 우리도 인간이고 존엄을 지키고 싶다 장애는 죄가 아니다</p>
<p>•언론에 보도되는 정보가 다 진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해는 다 당사자들이 몫이 되는 세상....</p>
<p>•정말로 장애인 학생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어서 그런? 기사를 내보내는 것이 아닌신 것 같은데 단순히 알권리를 빙자한 폭력으로밖에 보여지지 않고, 몇몇 기사는 선생님 측에서 일부러 상황을 일부러 유리하게 만들기 위한 여론몰이로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그 가족들이 행여 잘못된 것이 있을지언정 알려진 사람이라는 이유로 이런 식의 폭로 기사가 과연 정말 필요한 것이었을까 의문이 듭니다. 자극적인 댓글을 다는 분들 모두 진정 장애 학생 당사자와 비장애 학생 및 특수교사를 염려해서 말하는 것이 맞는지, 그저 본인의 삶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대한 분풀이를 엉뚱한 곳에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자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p>
<p>•장애인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정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장애에 대해 부정적인 보도가 나올 때마다 아이와 외출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 시선을 더 많이 느끼기에 어렵습니다.</p>
<p>•장애에 대한 기사에 인식개선이 될만한 좋은 보도는 적으면서, 공인이고 이슈되기좋은 건 물으뜸기식 기사를 쓰고 심지어 난무합니다. 장애인에 대한 배려나 그 가족들의 노력을 한순간에 덮어버립니다. 기자는 지식인입니다 지식이라면 그 분야에 이해와 통찰이 바탕이 돼야 하지요.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대중의 이목만 끌기에 더 좋은 기사들만 난무하고 그분야에 무관심했던 대중들에게 선입견과 편견을 조장했습니다</p>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

-
-
-
-
-
-
-
-
-

|| 발제2 ||

참 쉽고 잔인한,
어떤 해결책에 대하여
(발제문 별첨*)

김승섭 •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당신들의 쉽고 잔인한, 어떤 해결책에 대하여

김승섭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사건은 고착화된 시스템과 축적된 역사 위에서 발생합니다. 모든 변수가 통제된 상태인 실험실에서 일하는 사람의 눈으로 사건을 대하면, 우리는 사건을 탈맥락화, 탈역사화하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개별화된 사건은 그 사건을 실제로 만들어낸 시스템과 분리되지요. 그런 관점으로는 문제를 온전히 이해할 수도 없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만들어질 리도 없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 김 닐슨의 『장애의 역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전후 시기 의사들은 부모에게 발달장애를 가진 아이를 시설에 보내기를 권했다. 그 권고에 따랐던 많은 부모들은 그 아이에 대해 다시는 언급하지 않았고 그 존재를 삶에서 지웠다. 정신과 의사와 심리학자들은 그런 아이는 엄청난 돌봄을 요구하기 때문에 부모의 결혼 생활과 다른 아이들의 삶을 망칠 거라고 경고했다. 많은 부모들이 이 조언을 따랐다. 유명한 아동 정신분석학자였던 에릭 에릭슨과 그의 아내 조앤은 정신지체를 가진 아기가 태어난 후 시설에 보냈고, 나머지 자녀들 에겐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죽었다고 말했다.” (『장애의 역사』, 257쪽)

이 내용이 떠오른 이유는 이번 사건에서 한국 사회가 발달장애 아동 부모에게 던진 메시지가 80여 년 전 미국 사회가 발달장애 아동을 대하던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특수학교에 보내든지, 홈스쿨링을 시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가세요”라는 말은 어디로 가면 된다고 방향을 제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 눈앞에서, 내가 살아가는 세계에서 사라지라는 뜻이지요.

그러나 발달장애 아동과 그 부모들은 갈 곳이 없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환대하는 공간은 찾기 어렵습니다. 술한 좌절을 맛본 이들은 결국 이 세계에서 사라지는 길을 선택하곤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부모가 자신의 자녀를 살해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은 학교 폭력의 가해자이기보다는 피해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이 학교에서 돈을 빼앗기고 왕따를 당하는 경우는 일상적이어서, 언론에 보도조차 되지

않습니다. 2007년 출판된 한 연구는 서울에 있는 22개 초등학교 22,282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 발달장애 아동이 겪는 학교 폭력에 대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주요 교란 인자를 통제한 통계 분석 결과, 발달장애 아동이 학교 폭력의 가해자가 되는 비율은 비장애인 아동과 다르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되는 비율은 비장애인 아동에 비해 7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발달장애 아동이 착하고 선한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그러하듯이 발달장애 아동 중에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인간이 존재하고 그들은 여러 상황과 관계 속에서 다양한 행동을 합니다. 하지만 비장애중심주의가 뿌리 깊은 한국 사회에서 발달장애 아동은 가해자보다는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언론의 속성상, 더 눈길을 끌 수 있는 사건의 내용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발달장애 아동과 같은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 보도할 때 넘지 않아야 하는 최소한의 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웹툰작가 J 씨의 아들에 대해 지금까지 언론이 보도한 기사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선정적인 행동을 일삼는’ 모습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10살 자폐 아동을 한국의 언론 기사들은 마치 이 세계에서 사라져야 할 존재처럼 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사들은 아동에 대해 기사를 쓸 때 지켜야 하는 언론의 원칙에도 어긋나겠지만, 그만큼 반드시 지적해야 할 지점은 이 기사들로 인해 한국 사회가 문제 해결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을 둘러싼 역사와 시스템에 대해서는 이야기 하지 않고, 비난해도 저항하지 못하는 가장 약한 존재를 희생양으로 삼아 그 분노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두고 교사의 노동권과 학생의 인권이 대립하는 것인 양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시각입니다. 교육 현장에서 문제가 교사와 학생의 충돌로 드러난다 할지라도, 근본적인 갈등의 원인은 시스템입니다. 학생·학부모와의 충돌이 문제가 아니라, 과도한 노동에 시달리는 교사가 학생이나 학부모와 갈등 상황이 생겼을 때 학교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생겨나는 문제가 그 원인이지요. 모든 교사가 선하지는 않고 모든 학생이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인 공동체가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시스템의 문제점을 상세히 따져보지 않고 교사 개인과 학생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직관적이고 쉬운 일입니다. 그만큼 폭력적이고, 또 그만큼 문제 해결로부터 멀어지는 길이기도 합니다.

2021년 통계를 기준으로 한국에서 등록된 자폐 장애인의 99%가 만 40세 이하입니다. 그동안 자폐인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교육에 주로 머물렀지만, 20대 30대 자폐 인구가 늘어나며 노동의 문제가 되었고, 이제 점차 중·장년, 노인의 문제가 될 것입니

다. 지금과 같은 시스템이 유지된다면, 한국의 자폐인들은 그 모든 나이대에서 배제되어 보이지 않는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분리와 격리를 통해 이룩한 평화가 온전한 평화일 수 있을까요. 자폐인들을 배제한 공동체에서는 '정상적인 몸'에서 벗어난 인간은 누구도 안전하지 못합니다. 지체장애인도, 성소수자도, 이주민도 “특수학교에 보내든지, 홈스쿨링을 시키든지. 아니면 외국으로 가세요.”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나의 기준으로 인간의 몸을 서열화하고 열등한 몸을 배제하는 원칙을 고수하는 사회라면, 다른 기준으로 '열등한 몸'이 되는 소수자들 역시 차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마지막으로 발달장애 아동 부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80년 전 “엄청난 돌봄을 요구하기 때문에” 당신의 발달장애 아동을 시설로 보내고 “삶에서 지우라는” 의사의 충고에도, 어떤 부모들은 그렇게 말하는 세상과 맞서 싸우며 자신의 아이가 인간으로 존중받기를 요구했습니다. 그 과정은 아이에게 부과된 장애 낙인과 싸우는 동시에, 장애 아동 부모로서 겪게 되는 모욕과 차별과도 맞서 싸우는 과정이었습니다. 역사 속에서 그 싸움이 있었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격리하고 배제하지 않는 공동체를 상상할 수 있었고, 그렇게 인간으로서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이 사건을 겪으면서 혹시라도 우리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하며 조마조마했던 부모님들이 많이 계신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이기 이전에 차별과 낙인이 두려운 한 인간인 존재이지만, 어쩔 수 없이 내야만 하는 용기로 견디셨던 시간이 있다는 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애쓰셨습니다.

*Hwang S, Kim YS, Koh YJ, Leventhal BL. Autism Spectrum Disorder and School Bullying: Who is the Victim? Who is the Perpetrator? J Autism Dev Disord. 2018 Jan;48(1):225-238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

-
-
-
-
-
-
-
-
-

|| 토론1 ||

미디어는 장애를 어떻게
보도하는가?

김수정 • 민주언론정책연합 정책위원

미디어는 장애를 어떻게 보도하는가?

김수정 민주언론시민연합 정책위원 (2023. 9. 21.)

1. 들어가며

2022년 5월 JTBC는 < “신체·시각장애만 투표 보조” 발달장애인 ‘힘겨운 한 표’ > (5월 27일 임지수 기자)를 보도했습니다. 3월 대선에는 혼자 투표에 나섰지만 5월 지방선거의 경우 투표용지는 7장, 뽑아야 하는 직책도 제각각이라 발달장애인 김석원씨는 투표가 쉽지 않았다고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시각 또는 신체장애인만 다른 사람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현행 공직선거법의 한계를 지적한 보도였습니다. 2년 전 국가인권위도 발달장애인이 투표 보조를 못 받는 건 차별이라며 정당한 편의 제공을 권고했고, 법원도 장애유형과 무관하게 본인이 기표할 수 없어 보조를 받기 원하면 허용해야 한다고 결정했지만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장이 다르다고 지적한 보도입니다. 기자는 “참정권을 형식만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장해 달라는 발달장애인들의 호소는 앞으로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마무리 멘트를 했습니다.

2022년 3월 KBS는 < “발달장애인도 공약보고 투표하고 싶어요” > 보도에서 미국과 영국 등 국가에서는 발달장애인 등을 위해 쉬운 언어로 정보를 전달하는 공약집을 따로 만드는 사례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선관위가 사회적 기업과 협업해 처음으로 발달장애인을 위한 안내를 담은 자료집을 냈다고 하는데 후보들 개별 공약을 쉬운 말로 옮기는 작업은 빠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선거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 공보 등만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발달장애인 유권자는 등록된 장애인만 따져도 16만 명에 달하는데 투표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보도였습니다.

민주언론시민연합은 선거 시기마다 선거보도 모니터링을 집중해서 하고 있습니다. 선거 시기는 유권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제공해야 할 미디어의 책무가 매우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보도 모니터링은 전체 선거보도 경향을 살펴보는 것을 포함해 편향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가 없는지, 유익보도와 유해보도

를 파악해 장려하거나 경계해야 할 것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언론의 변화를 주문합니다. 앞서 소개한 보도의 경우에는 유익보도로 꼽은 사례입니다. 경향신문 <정치약자들의 힘겨운 총선>(2020), SBS <마부작침/승강기 없는 3층에 사전투표소...장애인은 어떻게?>(2020, 4, 9) 기획보도의 경우 장애인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한 내용을 포함했습니다.

반대로 <종편 뭐하니?> ‘감염경로 불명’을 ‘깜깜이’로, 뒤떨어진 인권감수성>(2020, 9, 4), <종편 모니터/장애인 비하 없이는 방송을 못하니>(2019, 3, 7) 등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인을 부정적으로 지칭하거나 조롱하는 의미를 담은 용어를 언론이 쓰거나 정치인의 막말을 비판없이 그대로 인용하거나 심지어 제목으로 쓰는 경우들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하고 보도 빈도를 세면서 공개했습니다. 언론이 장애인 권을 위해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인가를 두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장애인 비하표현 사용 횟수(1~2월)							
비하표현	JTBC	TV조선	채널A	MBN	YTN	연합뉴스TV	계
귀머거리					1		1
꼼추/곱추			2				2
난쟁이	3						3
등신	40	11					51
말더듬이			2				2
미치광이		5	6				11
천치	14	2	1				17
병어리	2	5	8	6		1	22
병신	2	41				1	44
외눈박이	1		2	2			5
장님	4	1		2			7
장애자			2	5			7
절름발이				1		1	2
정신병자		5	1	1			7
정신지체		1	7		1	8	17
정신이상자	2	3	4	2	1		12
계	68	74	35	19	3	11	210

<그림 4> 종편 4개사와 보도채널 2개사가 사용한 장애인 비하 표현 노출 횟수(2019/1/1~2019/2/25) ©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은 장애인과 관련한 보도에 소극적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관련 보도를 많이 보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20년째 이어지는 요구라면 믿기십니까? 김예지 국민

의힘 의원이 JTBC 뉴스룸에 나와 언론은 큰 사건 혹은 사고가 아니면 장애인 이동권 문제를 조명해 주지 않는다고 지적하기까지 했습니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장애인 단체의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할 때 관련해서 보도를 낸 언론도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2년 상반기까지 다섯 차례 넘는 시위가 있었고 관련 법개정 논의도 있었지만 보도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동권 보장 시위에 대해 무관심했던 언론도 언론 시민의 불편을 가져왔다거나 장애인 단체가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식의 주장을 언급하는 기사에서 장애인 이동권 시위를 탓하는 언급이 많습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도에 소극적인 언론들도 정치 갈등적인 사안이거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발언과 연관한 경우 온라인 기사로 중계할 정도로 열을 올리기도 합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자극적이고 갈등 유발 발언을 서슴없이 제목으로 내세우거나 인용해서 갈등을 부각하는 보도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 조선일보 4일 전 네이버뉴스

장애인 단체 지하철 시위 놓고 이준석 "타인 권리 과도하게 침해"
 장혜영 정의당 의원 "이 대표, 정당한 시위 공격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장혜영 정의당 정책위의장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시간대 지하철...



☞ 조선일보 3일 전 네이버뉴스

"임종 지키러 간다는 시민에 버스 타라?" 이준석, 연일 장애인 단...
 "소수자 정치, 성역 만들어 이해제가 못하게 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



☞ 조선일보 2일 전 네이버뉴스

이준석, 장애인단체 비판... "지하철 점거해 시민발 묶는게 문명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벌이는 지하철 시위를 연일 비판하고 있는 국민의...



☞ 조선일보 3일 전 네이버뉴스

전장연 오늘 3·4호선 지하철 시위... 이준석 "결국 서민만 불편"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 연대(전장연)가 오늘(28일) 출근길 시위를 진행한다. 연일 전...



<그림 5> 이준석 대표 발언 부각한 조선일보 온라인 기사(2022/3/25~2022/3/28) ©민주언론시민연합

2019년 5월 민주당사 앞 이해찬 대표가 참석하는 행사에 ‘시각장애인권리보장연대’ 관계자들이 기습 시위를 펼쳤습니다. TV조선과 MBN이 이 사건을 전하면서 ‘이해찬 대표가 봉변을 당했다’, ‘기습 항의를 받았다’ 고 썼습니다. MBN은 시

각장애인 단체들은 올해 7월부터 보건복지부가 새롭게 마련한 활동지원서비스로 오히려 혜택이 줄어들게 됐다며 지속적으로 반발해왔습니다” 라고 전했는데 시각장애인들의 목소리를 전한 부분은 이 한 마디가 전부입니다. 어수선하게 보였던 상황은 길게 전하고, 기습 시위를 한 연대의 입장과 그 이유는 짧게 냈습니다. 리포트에서는 “(민주당) 당사 앞은 아수라장”이라는 표현과 함께 장애인 단체 회원들이 “들어갈 거야!”, “밀지마요 밀지마요” 라고 외치는 장면, 경찰과 뒤엉켜 넘어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리적 충돌’이라는 묘사에 초점을 맞춘 보도로 볼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정당 대표나 여당에게만 지을 책임은 아니겠지만 장애 인권 보장이나 장애인 단체의 주장을 언론이 잘 다루지 않는 데다, 소극적이거나 불편이나 생떼를 부리는 모양으로 비추는 경향에 대해서는 파악하실 수 있을 것이라 봅니다.

민언련은 ‘이달의 좋은 보도상’ 을 꾸준히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에는 서울신문의 <코로나 블랙-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을 수상작으로 선정했습니다. 수상이유를 아래 붙입니다. 경향신문 <장애인도 소비자다>(2021년 7월 19일~8월 2일), CBS노컷뉴스 <‘탈시설 성지’ 스웨덴에서 찾는 장애인의 미래>(2021년 11월 9일~11월 21일) 등도 수상을 했습니다. 좋은 보도 사례가 알려져서 많은 시민께서 읽어보시도록 안내하고 기사를 작성한 언론인을 격려하기 위함입니다.

서울신문 <코로나 블랙-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
(10/5~10/10, 탐사기획부 안동환·송수연·고혜지 기자)

서울신문은 코로나19로 고립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삶을 장기간에 걸쳐 심층 취재했다. 복지시설의 휴관·폐쇄가 길어지면서 발달장애인 가정이 돌봄 부담을 도맡아야 했고, 이로 인해 발달장애인 부모가 자녀를 살해 후 자살을 시도하는 비극적 사건이 반복되고 있다.

서울신문은 발달장애인 아들과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어머니를 전화로 취재하며 아들의 행동 변화와 정부의 지원 부재 등의 현실을 일지 형식으로 기사에 담았다. 돌봄 피로로 자신을 ‘예비 살인자’라며 고통을 호소하는 아버지를 인터뷰하며 사각지대로 내몰린 장애인 가정의 현실을 드러냈다. 정부 정책의 낮은 실효성도 지적됐다. 정부가 ‘발달장애인 평생케어 종합 대책’, ‘주간활동서비스’ 등 대안을 내놨지만 실질적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다. 서울신문은 발달장애인 가족, 시설 및 정책 관계자, 재활 및 의료 전문가를 인터뷰해 다양한 각도에서 문제를 지적하고 해외사례를 분석해 대안을 제시했다.

발달장애인이 처한 현실은 언론에서 자주 다뤘지만 서울신문은 코로나19로 열악한 상황에 놓인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장기간, 밀도 있게 취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서울신문 보도 이후 보건복지부가 발달장애인 공적 돌봄 강화계획을 발표하며 사회적 변화도 끌어냈다.

이에 민언련은 서울신문 <코로나 블랙-발달장애인 가족의 눈물>을 2020년 11월 ‘이달의 좋은 보도상’ 신문부문에 선정했다.

2.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의 문제점

누스바움(Nussbaum)은 원초적 혐오와 투사적 혐오를 구분합니다. 원초적 혐오를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 작동하는 투사적 혐오는 공정한 사회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규제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회적 차원에서 반복적으로 적대적 감정을 증폭시킬 수 있는 표현의 사용이야말로 그 자체로도 해악이겠지만 공격대상이 된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에 대한 수준이 크게 줄어든다는 점에서 위험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혐오의 피라미드를 보면 편견과 혐오는 혐오표현으로, 이것이 차별로, 증오범죄로, 집단학살로 이어집니다.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내려는 사회적 노력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의 계기는 주호민 웹툰 작가와 특수교육 교사 사이의 법적 공방이지만, 더 크게 보면 장애 학생에 대한 학교 시스템의 취약성을 가시화할 수 있는 이슈입니다. 장애 학생을 위한 통합교육 시스템의 한계와 특수학급에 대한 교육적 지원이 부족함을 논의할 수 있도록 계기를 만들 수 있었으나,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오히려 장애 차별을 조장하고 혐오를 방관하게 하는 분위기를 부추긴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장애학생의 이상 행동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하는 태도, 비장애 학생과 학부모에게 교권 침해인지 아닌지를 납득해 보길 요구하는 방식의 보도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장애 편견과 혐오를 일상화한다는 점에서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장애아동 문제 행동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 비장애 아동과 부모의 시각에서 특수교육을 보는 언론 태도가 어떻게 문제가 될 수 있는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교권 침해에 대한 일련의 사건을 볼 때 악성 민원을 넣은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다툼으로만 사건을 비춘다면 교권 보호의 구조적 대응 방안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논의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거리에 나온 교사와 학부모, 학생 모두 사법적인 해결이 피해를 줄이는 대안으로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대해 동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육공동체가 갈등을 화해적으로 해결하는 역량을 키우고, 변화한 책임과 권리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할 수 있어야 교육 현장의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 것

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문제 현상에 대한 자극적인 전달로 관심을 끌고 사적 복수를 정당화하거나 가해자와 피해라는 이분법적 입장을 부각해 갈등을 키운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될 수 있어 보입니다.

유명 웹툰 작가이자 장애 아동의 부모가 교사의 수업내용을 녹음하고, 교사 교체를 위해 고소한 사실은 ‘장애 학생 학부모는 진상 학부모’ 라는 새로운 논란을 촉발했습니다. 교권 침해와 관련한 안타까운 사건이 잇달아 발생한 상황에서 유명한 학부모가 교사를 아동학대로 직접 고소한 사건이어서 세간에 주목이 컸습니다. 장애 아동을 둔 부모라는 특수성은 이해를 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비난 여론을 더하는 요건으로 작용했습니다. 결국 장애아동 부모가 제 자식만 챙긴다는 부정적 편견이 쉽게 확대했고 장애에 대한 혐오 막말을 양산하는 결과로 이어진 사태로 나아간 것이라고 봅니다.

백선영 조직팀장께서 발제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장애 자녀의 행동을 자극적인 표현으로 언론이 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의 장애에 대한 이해 없이 잘못된 행위 자체만을 놓고 보도하는 것이 장애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부추기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경계가 필요합니다. 특수학급에서 발생한 문제상황을 두고 비장애 학생과 학부모의 납득을 구하는 방식으로 보도되는 점도 문제를 키웠습니다. 장애에 따른 특수성을 이해하지 않는다면 도전행동에 대한 이해의 폭을 좁히고 교사와 학부모의 대처나 대응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애학생과 학부모, 교사의 대응에 대한 단편적 정보만 제공할 것이 아니라 개선을 위해 노력한 내용까지도 기사에 포함할 필요가 있습니다.

언론은 자극적인 표현이 있으면 더 부각해서 기사를 쓰는 방식이고, 심지어 기사 제목으로 표현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 표현을 있는 그대로 내보이고, 학교에서 학부모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는 표현으로 스스로 논란을 확산하는 방식은 매우 익숙한 보도 형태입니다. 여기서 학교와 학부모는 비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장애가 사건사고의 유일한 이유인 것처럼 기술되지 않도록 보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장애아동의 문제행동(혹은 돌발행동, 과격행동)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 식의 보도는 실질적인 문제 해결과는 거리가 먼 보도 방식이라는 점에서 부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을 언론인들이 알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아동을 포함한 통합교육이 아닌 분리교육을 당연한 것처럼 보도하는 경우라든가 자기 의사를 표현할 때 소리를 지르거나 위협하게는 폭력을 행사하는 행동을 문제행동 혹은 돌발행동으로 부르는 것 자체도 장애학생에 대한 이해가 미숙한 언

론의 모습입니다.

특수교사의 교권 보호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극단적이고 위험한 도전 행동에 대한 대처 방법을 교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교사를 확대하고 교육매뉴얼을 갖추는 것 등의 실질적 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장애학생은 원래 그렇다”거나 “교사가 싫어서 그랬다” 라는 식의 중계보도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고 부정적 편견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양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특수교사가 학교에 1명밖에 없는 현실에서 교사 혼자 장애학생의 다양한 요구와 특성을 고려해 교육 활동을 펼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을 제대로 알려야 하고, 제도적 해결책을 모색해 가도록 건강한 공론을 만드는 데에 힘을 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3. 대응방법 - 어떻게 해야 할까?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서 제7조(방송의 공적책임) 8항은 상대적으로 소수이거나 이익추구의 실현에 불리한 집단이나 계층의 이익을 충실하게 반영하여야 하고, 제21조(인권보호) 2항은 심신장애 또는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다룰 때 인권이 최대한 보호되도록 신중할 것, 3항은 방송은 정신적·신체적 차이 또는 학력·재력·출신지역·방언 등을 조롱의 대상으로 취급하여서는 아니되며, 부정적이거나 열등한 대상으로 다루어서는 아니된다고 하는 등의 공적책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23조(범죄사건 보도 등) 5항은 범죄사건 가해자의 정신건강 관련 정보 공개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객관적 근거 없이 정신질환을 범죄행위의 원인으로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합니다.

차별, 혐오를 규제하기 위한 방송심의, 통심심의를 통한 행정규제를 통해 언론의 보도 행위에 대한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봅니다. 또한 교육과 홍보, 연구를 통해 장애인권을 침해하거나 장애혐오를 조장하는 사례에 대한 수집으로 비판 근거를 모으고, 개선을 위해 공개적 변화를 촉구하는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무엇보다 언론 스스로 반성과 책임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언론의 역할은 공교육 회복을 위한 공론장 형성에 힘을 쏟는 일이어야 합니다. 특수교육이 어려움과 구조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일선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교권 침해에 대한 문제인식이 높아진 상황에서 학교 시스템에서 취약한 위치에 있는 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교육현장을 살펴보는 것이야말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이 장애학생의 장애에 대한 특수성을 이해하고, 통합교육과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 그리고 장애아동을 위한 공교육에서 중요한 협력자인 학부모와 교사 간의 역

할과 책임 그리고 권리에 대해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사안의 특수성을 무시한 언론 보도는 기자의 무지와 교육의 부재에서 비롯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비장애 학생과 교권의 보호와 회복은 장애학생의 교육권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 침해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 장애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심화하는 표현을 구분할 수 있도록 언론인에게 장애인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제공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

-
-
-
-
-
-
-
-
-

|| 토론2 ||

장애 혐오 양산하는 미디어,
나아지지 않는 구조의 문제점

윤유경 • 미디어오늘 기자

장애 혐오 양산하는 미디어, 나아지지 않는 구조의 문제점

미디어오늘 기자 윤유경

① 혐오와 비난만 남긴 용인 장애학생 학대 신고 사건 언론보도

언론을 통해 용인 장애학생 학대 신고 사건이 알려진 후, 언론은 장애 혐오, 소수자 혐오를 전파하는 데 주저하지 않았다. 소수자 이슈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해당 사례를 선택했다.

서울 서초구 초등학교 교사 사망 이후 언론은 ‘학부모(학생)은 가해자, 선생님은 선의의 피해자’ 라고 일반화하는 프레임을 설정했다. 이 프레임에 맞춰 언론은 ‘교권이 무너지고 있다’ 는 말과 어울리는 사례를 찾아내 보도하기 시작했고, 특히 학생의 교사 폭행 사례를 보도했다. 선정적인 제목으로 개별 폭행 사례를 짧게 다룬 기사들 대다수는 특수학급 장애 학생의 사례였다. 과거의 폭행 사례를 찾아 ‘특수학급 학생이 교사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는 식의 기사도 다수였다.

이러한 폭행 사건 보도에서 학생들을 비난하며 모두 특수학교로 보내야한다는 댓글을 쉽게 볼 수 있었다. 장애교육 현장에 대한 설명 없이 부정적인 장면만 드러내서, 대안은 없이 장애 학생들을 분리해내자는 여론을 만드는 언론보도다. 특수학교의 교육 문제를 폭행 사건으로만 처리하고 열거하는 데 그치는 기사들은 장애인에 대한 혐오를 부추겼다.

학부모의 교사 고소와 특수학급 아동의 교사 폭행 사례를 계속해서 보도하며 갈등을 부각하는 흐름에서, 웹툰 작가가 자폐 성향이 있는 자녀를 가르치던 초등학교 특수교사를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한 사실은 기사화됐다. 수많은 언론은 앞다투어 해당 사례를 기사화했다. 언론보도는 ‘장애학생의 교육 받을 권리와 교사들의 노동권’ 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있었고, 자극적으로 극대화된 언론보도는 혐오와 비난을 생산했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은 제3장에서 장애인 인권에 대한 보도 준칙을 정해놓고 있다. 인권보도준칙은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기획해 제정했다. 인격권, 장애인 인권, 성평등, 이주민과 외국인 인권, 노인 인권, 아동 인권 등에 대한 준칙을 규정하고 있다.

인권보도준칙은 기자들이 무의식적으로 또는 고정관념이나 편견에 치우쳐 인권 침해 보도를 하는 것에 주의하자는 취지에서 제정됐다. 이에 따라 당시 총 5회에 걸쳐 기자협회보를 통해 언론의 인권관련 보도양상을 분석한 기획 기사를 연재했다. 이어 언론계, 학계, 법조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 전문가 6명으로 ‘인권보도준칙 위원회’를 구성해 준칙안을 마련했다.

장애 인권 보도는기자협회의 기획기사 중 첫 번째 기사였다. 기사에는 ‘장애인 권 언론제작 가이드라인과’ 보고서 내용과 모니터링 사례들이 담겼는데, △정상인을 장애인의 반대말로 표기하는 보도 △ ‘절름발이 행정’ 등 장애를 빗대어 부정적인 내용을 묘사한 기사 △ ‘장애를 앓다’고 표현해 장애의 본질을 왜곡한 보도 △ ‘장애에도 불구하고’ 등 장애인을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접근하고 이질적인 존

재로 인식하게 하는 보도 등을 예로 들고 있다.

하지만 12년 전 기사에서의 지적과 2023년 현실은 그리 다르지 않아 보인다. 현재도 많은 정치인들은 공론장에서 장애를 빗댄 부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 최근 특수학급 학생의 교사 폭행 언론보도부터 용인 장애학생 학대 신고 사건 보도들도 장애를 부정적인 선입견으로 접근하는 언론보도다. ‘장애를 앓다’는 표현도 용인 장애학생 학대 신고 사건 기사에서 자주 확인할 수 있었다.

용인 장애학생 학대 신고 사건 관련 언론보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언론이 나서 장애 학생 혐오를 이끌어냈다는 점이다. 뉴스1 기사 <“본능에 충실한 주호민 아들, 서울 ○○초 온다”…전학 소식에 누리꾼 ‘시끌’>, “주호민 아들, 여학생 앞서 바지 내려”라는 자막을 띄운 JTBC ‘사건반장’, 서울경제 <“주호민 아들, 특히 작은 여학생 때렸고, 특수교사는 오히려 감싸고 선처 호소” 학부모들 ‘충격 증언’> 등 대다수 언론은 자폐 성향이 있는 아동의 행동을 선정적인 제목으로 묘사했다.

장애에 의한 과잉 행동 등 장애 학생의 특성을 무시한 채 자극적 내용만 뽑아낸 악의적 언론보도는 장애 학생이 처한 현실을 왜곡시키며 혐오를 부추긴다. 당사자가 아닌 다수의 말을 인용한 언론보도에서 장애 학생의 개인 신상과 사생활은 전혀 보호되지 않았고, 일회성 비난 여론은 장애 아동에 대한 폭력이 됐다.

※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

Ⅲ. 2차 피해 예방

: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는 물론이고 학대행위의심자로 지목된 사람도 보복이나 2차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유의합니다.

1.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피해자,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직장, 직업, 성별, 나이 등의 인적 사항을 되도록 보도 내용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2. 아동학대 장면을 묘사하는 사진·영상·음성·삽화 및 실제 폐쇄 회로 텔레비전 [CCTV] 영상·사진·음성은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사용합니다. 어쩔 수 없이 사용할 때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 신고자, 학대행위의심자 등의 인적 사항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또한 학대 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영상·사진 등은 피해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모방범죄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사용에 유의합니다.

3. 아동학대 정황·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학대행위의심자의 진술, 수사 기록 보도는 피해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되도록 하지 않습니다.

IV. 사실 기반 보도

: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전후 상황은 물론, 취재에 응한 목적과 의도를 모두 고려해야 하며, 제목·본문에 결론을 미리 판단하거나 추측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1.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단일 사건의 내용뿐 아니라 해결 방법, 아동학대 사건을 예방할 수 있는 대안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

2.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학대행위자로 지목된 사람의 행위를 선불리 판단하거나 추측하지 말아야 하며,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선정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3. 아동학대 관련 영상을 보도할 때, 화면과 인터뷰 내용 등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진실을 훼손하지 않고, 상황을 있는 그대로 전합니다.

4. 기사에 피해아동 측 진술만 담지 않도록 하고, 사건 전후 상황과 주변 인물 등을 종합적으로 취재함으로써 보도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게 노력합니다.

한국기자협회 아동학대 언론보도 권고 기준은 아동학대 사건을 보도할 때 아동이 특정되지 않아야 하며, 음성은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 정황·과정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진술, 수사 기록 보도는 되도록 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웹툰 작가의 아동학대 신고 정황과 전후 배경, 당시 상황을 ‘생중계’ 하는 것처럼 보도했다. 한국일보는 웹툰 작가가 상세한 입장문을 밝힌 지난달 2일 <“진짜 밉상이네, 너 정말 싫어”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단독보도에서 아동학대법으로 기소된 교사의 공소장을 입수했다며 웹툰 작가 부부가 녹음기로 확보한 발언 전문을 보도했다. 이후 많은 언론사들이 해당 공소장 내용을 인용보도했다.

수원지법에서 열린 세 번째 공판에서 담당 판사가 “아동학대 혐의 당시 상황이

녹음된 파일 전체를 재생해 말하는 뉘앙스나 전후 사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고 밝힌 뒤엔 아동학대 혐의 관련된 녹음파일 전문을 법정에서 틀 것이라는 보도가 수많은 언론사를 통해 쏟아졌다.

MBN <“교사에 첫마디가 ‘사타구니’ ” ...주호민 아들 우려했던 교사, 무슨 일?>, 파이낸셜뉴스 <“아이 첫마디가 ‘사타구니’ ” ..주호민 아들 우려해 ‘성교육’ 힘쓴 특수교사> 등은 교사의 법률대리인이 공개한 교사와 웹툰 작가 부부측이 나누는 대화 메시지 일부 중 자극적인 표현만을 발췌해 기사로 썼다. 해당 보도들은 장애 아동 인권에 대한 고려는 전혀 없이 대화 내용 전문을 그대로 공개하고 상황을 묘사했다.

용인 장애학생 학대 신고 사건 관련 언론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이유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게시글, 댓글 등 사실관계가 파악되지 않은 내용들을 ‘논란’ 과 ‘누리꾼 주장’ 이라는 명목 하에 기사화했기 때문이다. 사안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특정 교수의 발언, 일부 학부모의 발언, 한쪽 변호사의 주장 등 하나의 주장은 수많은 기사로 확인된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 면서 그 내용을 기사화하는 언론도 많았던 것에서 볼 수 있듯, 기사 가치에 대한 고려는 없이 사실확인도 하지 않은 무책임한 보도가 이어졌다.

언론은 왜 최소한의 고민도 하지 않은 채 자극성에 매몰돼 보도하는가? 어뷰징 기사 작성을 위한 자극적, 선정적 소재 찾기와 소위 ‘베껴쓰기’ 라고 부르는 인용 보도도 이유가 될 수 있다. 교사 사망 이후 언론이 설정한 프레임에 맞춰 소수자 이슈를 자극적으로 소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은 여론의 관심을 가져왔고, 유명인인 해당 웹툰 작가의 사례는 더 많은 여론의 관심을 가져올 수 있는 사례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용인 장애학생 학대 신고 사건 관련 언론보도 비평 기사를 작성하면서 또다른 이유를 엿볼 수 있었다. ‘우리는 열심히 취재하면서 더 많은 사실을 들었지만 그만큼 자극적으로 쓰지 않았다’ 고 주장하는 기자들도 있었고, 웹툰 작가 논란을 주도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열심히 취재하고 보도했다고 주장하는 기자들도 있었다.

보도 가치에 대한 판단 없이, 소수자 혐오를 조장하는 수없이 많은 기사를 생산해 내는 걸 언론의 공적 역할이라고 보는 데에는 동의할 수 없다. 이미 언론보도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은 웹툰 작가와 장애를 가진 자녀에 대한 비난과 혐오 댓글을 쏟

아내고 있고, 본질에서 벗어난 논의로 전개되어버렸기 때문이다.

갈등을 지나치게 언론이 확대재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적인 해결책을 찾는 보도가 필요하다. 언론에선 교육 주체 간 갈등 사례를 찾아 파헤치기보다는 현재 교육 현장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의제화해야 한다. 언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정부가, 학교가 현실적인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도록 여론을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언론은 비장애인뿐 아니라 장애인 교육 현장 개선을 위해 공동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재발방지책을 취재하고 제안해야한다. 하지만 현재 언론은 이와 무관한 보도로 사회에 혐오와 비난을 낳고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기사화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게시글을 받아쓰는 건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 갈등을 지나치게 언론이 확대재생산하는 것에서 벗어나 공적인 해결책을 찾는 보도가 필요하다.

② 정유정 다툼 SBS <그것이알고싶다>이 재생산한 장애 혐오

지난 6월 또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정유정씨의 범죄 행태를 분석하며 자폐 성향이 있다는 전문가 발언을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밀실 안의 살인자, 정유정은 누구인가’ (2023년 6월17일 방송분)에 대해서도 정신장애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방송에서 전문가들은 정씨의 자폐 성향에 대해 묘사했다. 이광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고등학교 친구들의 증언을 보면 정유정이 가지고 있는 성격의 맨 바탕에는 자폐적인 성향이 엿보인다”며 슬리퍼를 신고 있었던 정유정의 차림새와 걸음걸이를 두고도 “자폐적 특성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임명호 단국대 심리학과 교수도 “자폐 성향이 조금 적은 특성을 ‘아스퍼저’라고 한다. ‘고기능성 자폐’라고도 이야기한다”며 ‘고기능성 자폐’의 특성에 대해 말했는데, 방송은 고기능성 자폐를 자막과 내레이션으로 자세히 설명했다.

자폐 성향이 범죄와 직접적 관련이 없다는 설명도 있었지만, 방송은 반복적으로 자폐 성향에 대한 인터뷰를 내보내고 자폐에 대해 설명하며 ‘정유정’과 ‘자폐’라는 키워드를 연결시켰다. 전문가 발언 중 자폐가 범죄의 원인이 아니라는 내용이 있지만 자폐에 대해 상당한 분량을 할애했기 때문에 방송을 본 시청자들은 자폐가

정유정의 범행의 직접적 원인은 아니더라도 연관이 있는 것처럼 오인할 가능성이 높은 방송이었다.

이는 실제 <그것이 알고싶다>를 인용한 언론보도를 봐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송 직후 타 언론에서 자폐와 정유정의 범행을 연결짓는 보도가 쏟아졌다. 아래와 같은 제목으로 언론은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 내용을 인용하며 이 전문의와 임 교수의 발언을 받아들였다.

서울경제 <“정유정 자폐 성향 보인다”는 전문가들…그 몇 가지 이유>
파이낸셜뉴스 <‘그알’ 단독 확보 영상서…정유정 ‘사패’ 아닌 ‘자폐 성향’ 드러났다>
뉴스1 <정유정, 아스퍼거 증후군?…“머리 자르고 슬리퍼, 범행때 행적 특이”>
MBN <“정유정에게서 자폐 성향 보인다?”…전문가들 진단 이유는?>

자폐를 범죄의 원인인 것처럼 연결짓는 SBS <그것이 알고싶다> 방송과 인용보도에 대해 ‘장애를 낙인화하는 전형적 구태’ 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당시 제작진은 미디어오늘에 “절대 (자폐 당사자가) 잠재적 범죄자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정유정에 대한 정보가 너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증상을 보였는데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연구할 때 고려해봐야 하지 않을까’ 라고 한 단계 나아간 걸 시청자들에게 공유하고 싶었던 것” 이라고 말했다.

비판이 이어졌지만 <그것이 알고싶다>는 유튜브 채널의 ‘그알 비하인드’ 영상에서 또다시 정씨의 자폐 성향에 대한 전문의의 인터뷰와 ‘고기능성 자폐’ 를 설명하는 화면을 내보냈다. 해당 회차를 담당 PD는 유튜브에서 “우리는 방송에 ‘자폐 특성이 범죄와 연관되지 않는다’ 는 걸 여러차례 넣었다” 며 “정유정을 이해하고 분석하기 위한 이해의 틀로써는 의미가 있지만 다른 선량하게 살아가는 자폐가 있는 분들에 대한 피해로 이어지면 안된다” 고 언급했다.

이후 시청자 게시판에 올린 사과문에선 “정유정의 이상행동을 살펴보는 관점 가운데 하나로 ‘자폐 성향 가능성’ 이 제시됐지만, ‘자폐 성향이 범죄로 이어진다’ 거나 ‘정유정에게 면죄부가 될 수 있다’ 는 오해를 줄 수도 있어 방송에서는 3회에 걸쳐 ‘자폐 성향 자체와 범죄는 무관하다’ 는 사실을 강조했다” 며 사회적 약자 관련 이슈를 전함에 있어 앞으로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약속했다.

제작진의 말처럼 ‘자폐 성향이 범죄와 무관하다’ 면 방송 내용에 넣지 않는 것

이 맞다. 제작진은 정유정의 자폐 성향을 ‘정유정을 이해하는 틀’, ‘하나의 가능성’ 이라고 판단해 방송했지만, 범죄자와 직접 만나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짐작한 진단명을 언론을 통해 공개적으로 논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 해당 방송은 장애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재생산하고, 차별을 강화했다.

③ EBS 덩동댕유치원 보도자료 논란이 보여준 언론사 시스템 구조 개선의 중요성

EBS 어린이 프로그램 <덩동댕유치원>은 차별에서 비롯된 편견을 깨고 모든 아이들이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 다양한 캐릭터 등장을 이어가고 있다. 신체 장애가 있어 휠체어를 타는 ‘하늘이’, 다문화 가정 아동 ‘마리’, 태권도를 좋아하는 여아 ‘하리’, 책을 좋아하는 문학소년이자 조손 가정 아동 ‘조아’, 유기견이었던 ‘댕구’ 등 사회적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아동 캐릭터들이 출연한다. 젊은 여성을 유치원 선생님 역할로 등장시키는 대다수 어린이 프로그램과 다르게 ‘어린이의 감정을 잘 알고 갈등을 포용해줄 수 있어야 한다’ 는 기준으로 덩동샘 역할의 배우를 섭외했다.

지난달에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캐릭터 ‘별이’ 를 새로 등장시켰다. 본래 지난해 5월 개편 당시 다른 캐릭터들과 함께 등장시키고 싶었지만, 자폐 아동 캐릭터 묘사를 위한 제작진들의 공부가 부족하다는 판단에 1년 간 준비 시간을 가졌다. 제작진들은 왜곡과 편견 없이 별이를 묘사하기 위해 손인형 연기자, 성우, 작가, PD가 다 함께 1년여간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다.

제작진은 미디어오늘과 인터뷰에서 기본적 자료조사를 위해 특수학교, 통합학급 교사 등을 찾아 자문을 구했다고 밝혔다. 제작진은 자폐를 가진 캐릭터들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국내외 픽션과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며 공부했다. 특히, 자폐 아이를 둔 부모가 본인의 일상을 찍어 올리는 유튜브 브이로그 영상을 많이 참고했다고 전했다. 대본을 쓸 때는 매 회마다 전문가들에게 몇 차례 피드백을 받으며 대사를 수정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 손인형 연기자와 성우들도 눈 깜빡임, 눈 맞춤 등 인형으로 세밀하게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표현할 수 있는 방법과 대사상엔 없는 호흡 등을 연기하기 위해 노력했다.

하지만 이러한 제작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첫 방송 직전 배포된 보도자료에선 ‘별이는 보호자가 항상 곁에 있어야 하고 덩동댕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다’ 는 문구가 게재돼 논란이 됐다. ‘또다른 차별과 배제’ 라는 비판이 이어졌고, 제작진은

논란 직후 보도자료 작성 과정에서의 실수였음을 밝히며 별이가 유치원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후속편이 이미 준비돼있다고 했다. 담당 PD도 이에 대해 묻는 미디어오늘의 질문에 “보도자료에서 잘못 작성된 해당 부분을 걷어냈어야 했는데 내가 놓쳤다. 더 명확히 하기 위해 첫 편에도 ‘전학 온 아이구나’ 하는 대사를 다시 넣었다”고 말했다.

단순 해프닝, 사소한 실수같아 보일 수 있는 이번 논란은 언론사의 구조적 문제를 보여준다. 제작진이 1년 간 공들여 해당 캐릭터를 구현했지만, 홍보팀이 이를 시청자에게 소개하는 첫 창구인 보도자료에 논란이 되는 문장을 내보내 시작도 전부터 프로그램 전체적인 신뢰를 흔들리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언론사는 모든 지점에서 감수성이 필요한 구조다. 장애에 대한 프로그램, 보도를 하는 일부 기자, PD들만이 감수성을 갖춰야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구성원들 전체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편견없이 장애를 바라보며 보도하는 기자, PD가 없는 건 아니지만, 이에 못지않게 과거의 논리대로 차별, 혐오에 대한 감수성 없이 언론사가 운영되는 시스템의 문제도 있다.

사회부에선 특종을 해야하고, 홍보팀에선 살을 붙여 홍보를 잘해야하고, 온라인뉴스팀은 어뷰징 기사를 생산하고 자극적으로 뉴스를 인용해야하는 것이 언론사의 변하지 않는 현실이다. 용인 장애학생 학대 신고 사건 관련 언론보도들도, 타사 보도에 대한 인용보도가 계속 이어지면서 교묘하게 더 자극적이고 악의적인 보도로 변하는 양상을 보였다. 몇몇 기자들이 공부하고, 노력해도 언론사 전체적인 보도가 나아지지 않는 이유다.

④ 언론사 내부의 구조적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을 어겼다고해서 기자나 언론사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없다. 잘못된 보도가 있다고 지적할 때 해당 준칙을 근거로 들어 문제제기를 하는 것에 그칠 뿐, 실질적 제재 역할은 하지 않는다. 언론인권센터는 2018년 발표한 인권보도준칙 중심 보도 모니터 결과를 발표했는데, 인격권, 성평등, 노인 인권 등 준칙은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인권보도준칙이 현장에서 외면받는 이유는 무엇일까. 혐오를 양산하는 자극적 보도 원인에는 포털을 빼놓을 수 없다. 국내 1위 포털 사이트인 네이버는 2020년 4월

부터 제휴 언론사에 지급하던 뉴스 전재료(플랫폼 기업이 언론사에 지급하는 뉴스 사용료)를 폐지하고 기사로 생기는 ‘광고 수익’ 을 언론사에 배분하고 있다. 현재 까지 상세한 정책과 수익 기준들은 변화했지만, 네이버 정책에 따라 광고 수익은 언론사들이 생산하는 기사들의 트래픽에 따라 배분되고 있다. 기사 트래픽이 언론사 수익에 직접 연결되자 너도나도 트래픽이 많이 나오는 자극적인 뉴스 양산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다수 언론사들은 속보 등의 온라인뉴스를 생산하는 팀을 따로 두고 있다. 어뷰징 기사만 대응하는 팀도 따로 있다. 미디어오늘 < “트래픽 안 나와 외신에서 성폭행·불륜 키워드 검색 기사 썼다” > 기사(2021.06.22, 박서연 기자)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당시 이슈 대응 매체 ‘조선NS’ 를 만들었다. 조선NS 대표는 중앙일보와 한국경제, 국민일보 등에서 포털 전송 기사 노출 빈도수가 월등히 많은 온라인뉴스를 써온 기자들을 영입했고, 추가로 다른 매체에서도 기자들을 영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기사에서 민영뉴스통신사 A언론사 전직 데스크는 “경영진 쪽에서 매출과 연결해 데스크에게 압박을 가하면 트래픽을 신경 쓸 수밖에 없다. 트래픽이 나오도록 기자들을 쪼게 된다” 고 말한 뒤 “인사고과 항목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사건수, 트래픽 등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 있다” 고 밝혔다.

B언론사 기자는 “데스크가 무리한 주문을 계속한다. 최근 들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 특정 이슈가 발생하면 취재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일단 10~20분 안에 쓰라고 한다. 너무 말초적인 아이템을 쓰라고 지시하는 경향이 크다” 며 “저널리즘에 관심이 많지 않은 기자들조차 ‘과하다’ ‘나 사표 쓸 것 같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 고 말했다.

경제매체 C언론사 기자는 “남녀갈등, 자극적 국제뉴스 등의 기사는 트래픽 때문에 쓰는 기사다. 이런 기사 우리도 안 쓰고 싶다. 온라인뉴스팀에 있을 때 실험을 해봤다. 트래픽이 안 나와서 외신 사이트에 들어가 성폭행, 불륜 등의 키워드를 검색해 기사를 썼는데 조회 수가 터지더라. 이런 기사가 쓸 수밖에 없는 건 사람들이 많이 읽는다. 정보성 기사보다 말초적인 기사에 반응하고 욕하려고 클릭한다. 좋은 기사를 써봤자 보지 않는다” 고 토로했다.

트래픽을 위해 기사를 쪼개기도 한다고 했다. C언론사 기자는 “원래는 어떤 현

상이 있다면 더 취재하고 반론도 듣고 써야 하는 게 원칙이다. 하지만 트래픽을 위해 일단 현상을 쓴다. 반론을 또 따로 쓴다. 묶어서 종합으로 또 따로 쓴다. 트래픽이 세 배가 된다. 하나만 쓰는 언론사는 바보다” 라고 말했다. B언론사 기자도 “일단 현상 기사를 하나 쓰고, 한 문단 더 붙여 ‘종합’ 으로 쓰라고 한다. 기사를 쪼개고 쪼개서 4개까지 쓰는 곳도 봤다” 고 말했다.

종합일간지의 D언론사 기자는 “페이지뷰를 높여야 한다고 회사에서 강조한다. 자극적인 국제뉴스를 쓰는 팀이 따로 있긴 한데 왜 저런 기사를 양산하는지 모르겠다” 며 “페이지뷰가 별로 공지된다. 전사적으로 공지되지는 않는다. 조회 수가 수 입으로 연결되니까 이러는 것 같다” 고 설명했다.

종합일간지의 E언론사 디지털 전략 담당자는 “광고 수익 배분은 100% 트래픽에 따라 결정된다. 정량적인 평가나 항목이 없고 눈에 보이는 건 트래픽” 이라고 말한 뒤 “온라인 대응팀을 자꾸 키워놓으니까 이렇게 된 거다. 조회 수 많이 나오면 칭찬해주고 있는 게 현실이다” 라고 했다.

트래픽을 높이기 위한 대부분의 기사는 빠르게, 베껴써서, 취재없이, 자극적으로 쓰는 기사들이다. 특히 요즘은 커뮤니티발 기사들이 어뷰징 기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2019년부터 다음, 네이버, 네이버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서 연예 섹션 댓글을 폐지하고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SNS, 유튜브, 커뮤니티에 댓글이 몰렸고 해당 글들을 인용해 쓰는 경우가 많아졌다.

미디어오늘 <사라진 실검·연예댓글... ‘여론 권력’ 은 커뮤니티로>(2022.01.20, 정민경 기자) 기사에 따르면, A 편집국장은 “ ‘실검’ 과 연예 댓글이 사라지니 기사들이 기사거리를 커뮤니티에서 찾고, 기사 반응을 커뮤니티에서 확인하게 된다. 그러다 보니 커뮤니티 힘이 점점 더 세지고 있고 커뮤니티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몇몇 유저들이 좌표를 찍고 연예인을 공격하는 사례도 있다” 고 말했다.

이러한 언론사 수익 구조 속에서, 적절한 장애 보도를 쓰는 것은 발제부터 막히는 경우가 많다. 여전히 많은 구성원들에겐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슈로 치부되기도 하고, 그만큼 데스크 과정에서도 차별, 혐오 표현이 걸러지기도 어렵다.

장애, 성평등, 인권 등에 관련해 필요한 언론보도가 언론사 구성원 개개인의 노력과 공부, 감수성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이유다.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언론사

자체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 장애 인권에 대한 교육과 가이드라인, 철저한 데스크킹 과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언론사에도 지속적인 외부의 감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토론회, 좌담회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다. 미디어 비평뿐 아니라, 타 언론사에서 서로 문제가 되는 지점에 대해선 자유롭게 비평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 시민단체 등 외부에서도 언론사의 보도를 적극적으로 비평하고, 언론사 내부에서도 이러한 비평에 응답해 개선 노력을 보여야 한다.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

-
-
-
-
-
-
-
-
-

|| 토론3 ||

보도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장예정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보도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장애정(차별금지법제정연대 공동집행위원장)

미디어의 힘은 실로 엄청납니다. 2022년, 대한민국을 휩쓸었던 미디어콘텐츠를 딱 하나 뽑는다면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폐스펙트럼’이라는 단어를 알게 되었고, 한국의 많은 영우들과 우변호사가 만나는 여러 사건들에 대한 논의가 내내 이어졌습니다. 미디어가 갖는 힘이라는 것이 이런거구나, 세상이 온통 장애인과 장애인권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차는걸 보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해가 바뀌고 이번에는 더글로리라는 작품이 불러 일으킨 파장으로 학교폭력에 대한 많은 증언과 논의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공중파 방송에도 나오는 유명 웹툰작가 J씨의 이야기가 모든 언론사에 도배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건은 J씨와 J씨의 발달장애를 가진 아들, 특수반이 운영되고 있는 학교와 특수교사, 교실의 학생들 그리고 학부모가까지 많은 인물들이 얽히는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보도는 지금도 끊이지 않고 사건의 진행 상황을 꼼꼼히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몇 번의 검색이면 사건의 경과부터 관련된 인물, 보도된 뉴스들과 이에 대한 칼럼과 단체들의 성명까지 별다른 노력 없이 모두 살펴볼 수 있습니다.

보도해야 할 것 : 이유, 맥락, 앞으로의 방안

2017년. 강서구 서진학교 건립에 대한 토론회 자리에서 장애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은 사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할 것입니다. 그 당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 사안을 특수학교 건립을 둘러싼 지역주민들과 장애인 부모들의 갈등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 「학교 가는 길」의 김정인 감독을 비롯하여 이 사안의 맥락을 찬찬히 살핀 보도들을 보면 그렇게 납작하게만 판단할 수는 없는 문제였습니다. 서진학교 부지 주위의 임대아파트에 대한 낙인, 그로 인한 갈등, 학교부지에 대한 정치인들의 책임 없는 병원건립 공약과 파행 등 지역의 이야기와 공터를 둘러싼 정치의 이야기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기에 무엇보다도 맥락이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서진학교가 완공되고 건축상까지 받고 다큐멘터리가 개봉하고 책이 출간될만큼의 시간이 지나는동안 시민들의 머릿속에 각인된 것은 ‘무릎 꿇은 부모님들’에 머물러 있습니다.

‘용인 장애아동 학대 신고 사건’ 사건으로 돌아가서, 많은 시민들이 이 사건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아직도 진행중이고 워낙 보도가 많았기에 정확히는 아니더라도 파편적으로, 대략은 알고 있습니다. 절대 다수의 기사들은 ‘녹음기’, ‘바지를 내렸다’, ‘특수교사 직위해제’, ‘아동학대’와 같은 열쇳말들과 함께 등장합니다. 교실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전해지는지’ 각자의 입장이 어떻게 갈리는지 등이 보도됩니다.

발달장애 어린이들의 행동 특성은 어떠한지, 한 아이의 인성의 문제가 아니라 장애의 특성이라면 그동안 한국의 통합교육에서는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특수교사의 수는 충분한지 채우는 어떠한지, 한국에서의 경험과 기록이 부족하다면 통합교육을 이미 훨씬 전부터 체계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은 어떻게 다루는지 기사를 통해 접하기 매우 어려웠습니다. 언론에서 ‘용인 장애아동 학대 신고 사건’을 전국민에게 낱알이 공개하는 동안 시민들은 장애의 특성은 어떻게 나타나는지, 장애-비장애 통합교육의 어려움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는 어떻게 개선되어나가야 하는지는 여전히 알지 못합니다.

모든 기사들이 특히 분량이 매우 짧은 방송뉴스가 매 꼭지마다 맥락과 이유를 빠짐없이 설명하며 보도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발달장애인이 피가해자, 혹은 어떤 이유로든 연관된 모든 사건을 장애인 복지에 대한 현신진단부터 시작하여 보도할 수는 없으니 말입니다. 다만, 반드시 짚어져야 할 맥락을 충분히 다룰 수 없다면 그 보도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보도하지 말아야 할 것 : 불필요한 사생활

언론에 가장 바라는 일은 보도해야 할 것을 모두 담아달라는 것보다 보도하지 말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지난 7월, 어느 부동산 커뮤니티 등을 시작으로 J씨의 가족이 서울 00지역으로 이사를 하고 전학도 한다더라, 는 글이 일파만파 퍼져나갑니다. 뉴데일리를 시작으로 기사도 나기 시작합니다. 보도 초기에는 지역은 물론 학교 이름까지 거론되며 보도가 이어졌습니다. 지금은 학교 이름까지 그대로 뜨는 곳은 많지 않지만 서울시 어느 구인지 충분히 특정할 수 있을만큼의 정보는 기사에 담겨 있습니다. 전학 사실뿐 아니라 전학하는 지역과 학교명이 언론이 통해 보도되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전학에 보도뿐 아니라 너무나 많은 정보가 기사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기사에 실리고 있는 내용들은 언론에서 비판하고 싶어하는 J씨만으로 국한되지도/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 기사를

통해 전국민에게 내던져진 것은 발달장애가 있는 만 10세의 어린이입니다. 또한 교실에서 힘겨운 생활, 생활 해야 하는 어린이들입니다. 우리 사회가 장애인과 어린이가 사회적 약자라는 명제를 기각시킨 것이 아니라면 이들의 사생활은 충분히 보호되어야 마땅합니다.

보도는 차별을 낳고

언뜻, ‘용인 장애아동 학대 신고 사건’의 기사들은 바람직한 보도 행태는 아니지만 그 자체로 ‘장애혐오’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 내용 자체는 직관적으로 장애혐오가 아니라 할지라도 ‘문제적인 장애아동과 그 학부모’로 읽히기 바라는 몇몇 악의적인 보도들은 장애아동과 양육자들에 대한 편견을 공고히 하는 효과를 낳습니다. 그것은 장애아동에 대한 낙인으로, 장애아동 양육자에 대한 편견으로 이어집니다. 결과적으로 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하는 장애인 당사자에 대한 차별을 조장합니다.

특수교사들의 열악한 처우, 현실화해야 하는 전담학생의 숫자 등 제도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장애교육의 문제를 어느 정도 담으려 노력하는 특수교사들의 인터뷰를 담으면서도 헤드라인은 문제적입니다. 인터뷰에 응한 교사들의 마지막 이야기는 “장애 학생들이 소외되지 않고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잘 갖춰지는 겁니다.”이었으나 이 기사의

헤드라인은

““아이 변 상태 봐달라“ 요구도…몸도 마음도 멎드는 특수교사들” (2023.09.19. Jtbc)

입니다.

다시 호명되는 차별금지법

이 사건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시민들이 다시 한 번 차별금지법 제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합니다. 법안의 어떤 내용이 이 같은 사태를 구제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마땅히 없다입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경쟁에 내던져진 언론환경이 양산하는 혐오 ‘조장가능성’ 글을 규제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이런 사태가 있을때마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는 보편적인 인권을 너르게 보장해줄 안전망이 없다는 절규입니다. 물론 차별금지법이 무용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혐오표현의 규제, 차별을 조장하는 미디어의 문제를 규율하기 위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 차별인지, 혐오란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가장 기본법의 제정입니다. 대한민국

국은 그조차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행태의 보도가 조장하는 차별의 징조가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법적으로 짚어내기가 어렵습니다. 인권기본법, 평등의 기본법으로서 역할을 할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엇보다 시급한 이유입니다.

마치며

배우 박은빈씨는 2023년 백상예술대상 수상소감에서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사실 제가 세상이 달라지는데 한 몫을 하겠다,라는 그런 거창한 꿈은 없었지만 이 작품을 하면서 적어도 이전보다 친절한 마음을 품게 할 수 있기를. 또 전보다 각자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들을 다름으로 인식하지 않고 다채로움으로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연기를 했었”다. 또 “자폐인에 대한 또 변호사에 대한, 저를 스쳐가는 생각들이 혹시 저도 모르게 갖고 있는 편견으로 기인한 것은 아닐지 매시간마다 검증하는 것이 꼭 필요했었”다.

한 배우는 자신이 선택하는 작품이, 자신의 연기가 편견에서 오는 것은 아닌지 끝없이 고민하였습니다. 사회를 바꿔내겠다는 투쟁의지는 아니었지만 더 많은 사람들이 장애인에게 조금 더 친절한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카메라 앞에 서지는 않지만 펜을 쥐는 많은 언론인들이 한 배우의 마음만큼만 장애를 진지하게 대하기를 바라봅니다.

※ 참조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제3장 장애인 인권 1. 언론은 장애인이 자존감과 존엄성, 인격권을 무시당한다고 느낄 수 있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가.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차별하는 표현에 주의한다.

나. 통상적으로 쓰이는 말 중 장애인에 대해 부정적 뉘앙스를 담고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는다.

다. 장애 유형과 장애 상태를 지나치게 부각하지 않는다.

라. 장애인을 보장구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수동적 존재로 묘사하지 않는다.

마. 동정 어린 시각이나 사회의 이질적 존재라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바. 장애를 질병으로 묘사하거나 연상시킬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2. 언론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선다.

가. 장애에 대한 잘못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나. ‘미담 보도’의 경우 장애인을 대상화하거나 도구화하지 않는다.

다. 장애인을 인터뷰하거나 언론에 노출할 경우 반드시 당사자의 입장을 고려한다.

라. 장애인을 위한 제도 개선과 사회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미디어가 장애 혐오의 장이 되지 않게 하려면」

좌담회

-
-
-
-
-
-
-
-
-
-

|| 토론4 ||

언론 보도와
법적 책임

김남연 • 사단법인 두루 변호사

언론보도와 법적 책임

사단법인 두루 김남연 변호사

I. 들어가며

이 좌담회가 기획되게 한 사안에 관한 기사사례에 대해서는 앞서 다양히 다뤄 주셨고, 문제되는 점에 대해 여러 패널들께서 말씀하심.

이에 대해 현행법상 문제되는 부분과 다뤄볼 방법, 향후 더 고민할 지점 등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함.

II. 사안 관련 언론보도의 기준 또는 참고

1. 언론중재위 시정권고 심의기준¹⁾

(1) 제 2 조 명예훼손금지

(2) 제 10 조의 2(차별 금지)

① 언론은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을 이유로 편견적 또는 경멸적 표현을 삼가야 한다.

② 보도 과정에서 그 표현이 사안의 설명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한, 인종, 국적, 지역, 성별, 종교, 나이, 육체적·정신적 질병이나 장애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과도하게 보도하여 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주요 시정권고 심의기준 위반유형 안내 중 관련 부분]

인종·성별·나이·성적지향 등에 대한 부정적 관념을 표출하는 편견적·경멸적 표현을 게재하거나,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에도 인종·성별·나이·성적지향 등을 지나치게 부각하여 보도할 경우차별이나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2.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²⁾

1) 언론중재위, 2022. 6. 29.

2)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규칙 제150호, 2020. 12. 21

(1) 제 9 조(공정성) ①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9.>
②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 하여야 한다.

(2) 제 20 조(명예훼손)

(3) 제 21 조(인권보호)

3. 신문윤리실천요강³⁾

(1) 제 3 조 보도준칙

(2) 제 4 조 사법보도준칙

(3) 제 11 조 명예와 신용존중

4.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⁴⁾

제 3 장 장애와 인권

5. 혐오표현반대 미디어 실천선언⁵⁾

(1) 1. 혐오표현(Hate Speech)은 “성별, 장애, 종교, 나이, 출신지역, 인종, 성적지향, 종교 등을 이유로 어떤 개인·집단에게 모욕·비하·멸시·위협 또는 차별·폭력의 선전과 선동을 함으로써 차별을 정당화·조장·강화하는 효과를 갖는 표현”을 말한다.

(2) 5. 우리는 가짜뉴스나 왜곡된 정보에 기반한 혐오표현은 철저한 팩트체크를 통해 비판적으로 전달하겠습니다.

■허위조작정보로 증폭되는 혐오표현

6. 2023 년 인권보도참고 사례집⁶⁾

III. 언론보도에 따른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3)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 2021. 4. 6. 개정

4)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2014. 12. 16.

5) 한국기자협회·방송기자연합회·한국인터넷기자협회·한국PD연합회·한국아나운서연합회·한국방송작가협회·인플루언서경제산업협회·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국가인권위원회, 2020. 1. 16.

6) 한국기자협회/국가인권위원회, 2023. 3.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거의 대부분의 관련 규정에 명예훼손을 하지 않도록 유의하면서 언론보도를 할 것을 요구함.

1.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여부(민/형사)

(1) 맥락이 삭제된 채 아동의 구체적인 행동 등에 대한 내용만 언급된 기사들에 대해서는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문제될 수 있어, 이를 민/형사적으로 다뤄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2) 의견이나 주장이 아닌 사실의 적시로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고(형법 제 307 조)⁷⁾, 본 사안의 경우 당사자 아동과 그 가족의 명예훼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임.

(3) 참고 판례 : 수사중인 사안에 대한 언론보도 관련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사례(재판 진행중인 우리 사안의 경우는 아니나, 언론보도시 주의의무에 대해 참고)⁸⁾

1) 언론사가 추가취재 없이 경찰이 제공한 자료만 믿고 허위사실을 보도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배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대법원 2018. 11. 9 선고 2015 다 240829 판결)

2)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일간신문사 기자가 타 신문사의 기사 내용과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 사본만을 열람한 것만으로는 위 기자가 기사 내용의 진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취재를 다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0 다 50213 판결),

2. 현행법령상 피해구제 방안

(1)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 신청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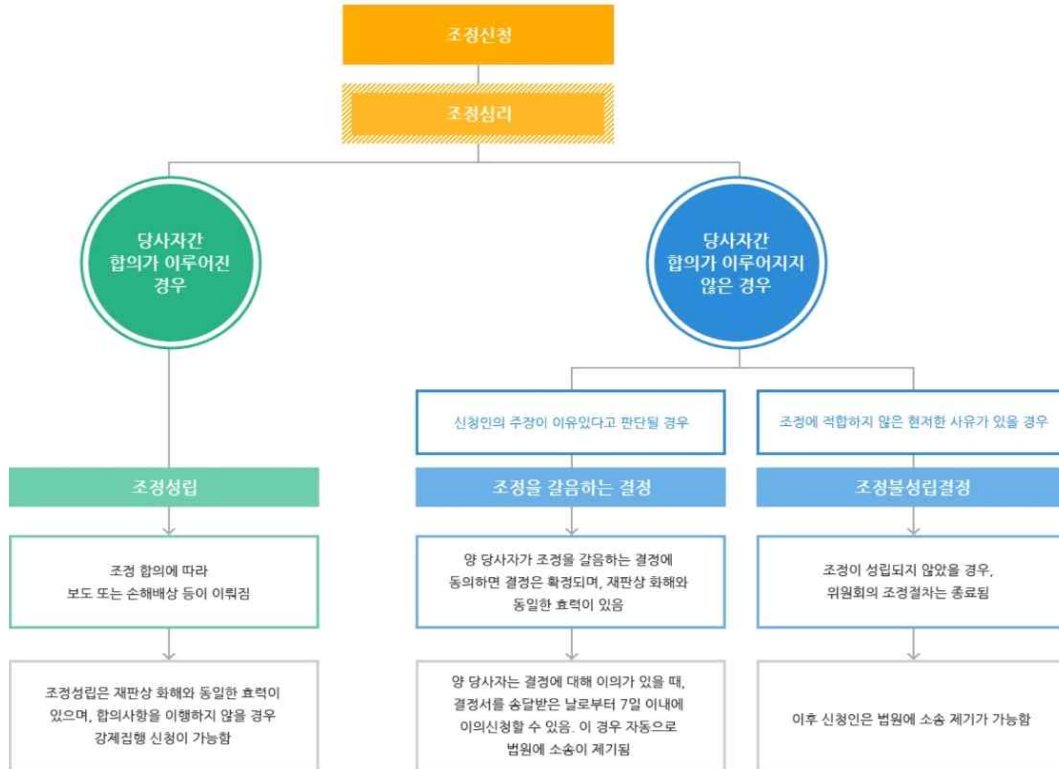
7)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 조각되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없음(형법 제310조).

8) 1) 보도 내용이 수사기관에 의하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에 관한 것일 경우, 일반 독자들로서는 보도된 혐의사실의 진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언론기관이 가지는 권위와 그에 대한 신뢰에 기하여 보도내용을 그대로 진실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고, 언론보도가 가지는 광범위하고도 신속한 전파력 등으로 인하여 보도내용이 진실한 것인지 묻지 않고 그러한 보도 자체만으로도 피의자로 거론된 사람이나 그 주변 인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혐의 사실을 보도하는 언론 기관으로서는 보도에 앞서 혐의 사실의 진실성을 뒷받침할 적절한고도 충분한 취재를 하여야 하고, 기사를 작성하여 보도할 때도 그 기사가 주는 전체적인 인상으로 인하여 일반 독자들이 사실을 오해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사 내용이나 표현방법 등에 대하여도 주의를 하여야 한다(대법원2002. 5. 10. 선고2000 다50213판결, 대법원2007. 12. 27. 선고2007 다29379판결등 참조).

9) 아래 그림은 언론중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 언론중재법상 정정보도청구¹⁰⁾, 반론보도청구¹¹⁾등과 관련하여 언론사와 분쟁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가능

- 직권조정결정 후 이의신청으로 소송절차 이전시, 조정결과가 재판부에 전달됨



(2) 형사책임

1) 형법상 명예훼손 또는 모욕

10) 언론중재법 제14조(정정보도 청구의 요건)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이 진실하지 아니 함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이하 "피해자"라 한다)는 해당 언론보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3 개월 이내에 언론사,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이하 "언론사등" 이라 한다)에게 그 언론보도등의 내용에 관한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언론보도등 이 있는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언론중재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 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11) 언론중재법 제16조(반론보도청구권) ①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보도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그 보도 내용에 관한 반론보도를 언론사등에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에는 언론사 등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보도 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 수 있다.

- 2019. 3.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의결한 ‘명예훼손범죄의 양형기준’에 따르면, 특별양형인자 가운데 가중요소로 제시된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에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이나 혐오 또는 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가 포함되어 있음.

- 여기서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과 ‘혐오 또는 증오감’이 함께 동기로 적시되어 있어 혐오에 대한 의미에 혼동을 줄 수 있는데, ‘혐오 또는 증오감’은 소수자 집단에 대한 고정관념이나 왜곡된 편견을 기제로 하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여겨짐.¹²⁾¹³⁾

- 한편 양형기준은 법적 강제력이 없는 권고적 기준이지만 법관이 양형기준을 이탈하는 경우 판결문에 양형이유를 기재하게 되어있으므로 실제 양형에 영향력을 미치는 기준이라 할 수 있는데, 관련 법률이 미비한 상태에서 법원이 혐오 표현에 대응하기 위한 단초로서 개인이나 특정될 수 있는 집단에 발화된 혐오 표현에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가 적용된 때 가중인자로서 ‘혐오와 증오감’을 고려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¹⁴⁾

2)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한 사실 또는 허위사실 적시(법 제 70 조)

(3) 명예훼손을 원인으로 하는 사전금지청구(민사집행법 제 300 조 제 2 항)

- 인격권을 피보전권리로 (i)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닐 것, (ii) 오로지 공공의 이익이 아닐 것, (iii) 피해자에게 중대하고 현저하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을 것, (iv) (iii)의 경우 표현행위의 가치가 피해자의 명예에 우월하지 않을 것, (v) (iii)의 경우 사전금지가 유효적절한 수단일 것을 요함¹⁵⁾

(4)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1) 손해배상청구(민법 제 750 조, 언론중재법 제 30 조 제 1 항)

2) 명예에 대한 침해배제를 위한 기사삭제 청구(민법 제 751 조, 제 764 조, 언론중재법 제 30 조 제 3 항)

12) 사법정책연구원, 혐오표현의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20, 238.

13) 공정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해당 양형기준은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에 기초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나 모욕범죄에 대해서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의하여, 즉 혐오 표현의 문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반영되었음을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대법원 양형위원회, 2019 양형기준안에 관한 제14차 공정회 결과보고, 양형위원회(2019), 152].

14) 위 연구, 172. 홍성수,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의 주요 내용: 혐오 또는 증오감에 의한 범행 가중 처벌을 중심으로”, 언론중재(2019. 여름), 92.

15) 대법원 2005. 1. 17. 선고 2003마147 결정

-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서 기사삭제 청구의 당부를 판단할 때는 그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사로 인해 현재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는지를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형량하면서 판단하면 되는 것이고, 피고가 그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등의 사정은 형사상 명예훼손죄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정하는 사유는 될 지언정 기사 삭제를 구하는 방해배제청구권을 저지하는 사유로는 될 수 없음(대법원 2013. 3. 28 선고 2010 다 60950 판결).

IV. 당사자가 속한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1.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성립여부(민/형사)

(1) 이와 별론으로 특정 당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이 인정되는 언론보도가 관련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인정될 수 있을지 검토함. 법원은 모욕이나 명예훼손은 특정 개인 또는 일정 조건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집단의 사회적평가를 보호범의 것으로 하는 바 원칙적 불허 예외적 인정

(2) 법원의 입장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명예훼손의 내용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아니한다. 다만 명예훼손의 내용이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 여겨질 정도로 구성원의 수가 적거나 당시 주위 정황 등으로 보아 집단 내 개별 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에는 집단 내 개별구성원이 피해자로서 특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 구체적 기준으로는 집단의 크기, 집단의 성격과 집단 내에서의 피해자의 지위 등을 들 수 있다(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 다 35199 판결 등 참조).

- (모욕죄)여성 아나운서에 대한 모욕적인 표현이 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2014. 3. 27 선고 2011 도 15631 판결)

- 텔레비전 방송보도 중 사용된 ‘○○지방경찰청 기동수사대’ 라는 표시에 의하여, 방송보도의 대상인 수사 당시 위 기동수사대에 근무하였던 경찰관들이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되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4 다 35199 판결)

- ‘군검찰’, ‘육군 법무실’, ‘육군 검찰’이라는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육군본부 검찰부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육군본부 검찰부 소속 검찰관과 검찰수사관이 위 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의 피해자로 특정된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3다 74837 판결)

(3) 현행법과 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집단 내 개별구성원을 지칭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때라고 보기는 어려워 이 사안 관련 언론보도로 일반 장애아동전체나 그 가족들 전체의 명예가 직접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2. 현행법상 다룰 수 있는 방안

(1) 형사책임/민사책임을 묻는 경우

- 앞서 살펴본 예외적(집단 구성원이 피해자라고 특정될 수 있는 경우)인 경우 제외 어려움

- 민사상 불법행위는 공연성이 요구되지 않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경우에도 성립한다는 점에서 형사규제보다 그 대상행위가 넓지만,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행위”가 있어야 해서 특정하기 어려운 집단/단체의 경우 역시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2)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구제

- 괴롭힘 등의 금지 규정(법 제 32 조)¹⁶⁾ 위반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청구(법 제 46 조)

- 법원에 차별구제청구(법 제 48 조)

'정신분열적 외교', '외눈박이 대통령' 등 장애 특성을 비하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의 발언은 혐오표현에 해당하지만, 손해배상을 물어야 할 정도의 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2022. 4. 15. 연합뉴스)¹⁷⁾

16)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괴롭힘 등의 금지) ①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

③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학교, 시설, 직장, 지역사회 등에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집단따돌림을 가하거나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7) 서울남부지방법원2022. 4. 15 선고2021가합105102 판결[장애인차별구제청구] 관련 보도내용이며, 현재 이 사건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심 진행중임.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¹⁸⁾인 경우 형사처벌(법 제 49 조)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 구제조치(국가인권위원회법 제 4 장)

- 국가인권위원회는 조사결과에 따라 형사고발, 징계권고(법 제 45 조)¹⁹⁾

- 기타 조정, 구제조치 등의 권고 등

- 언론보도에서의 장애인 비하 용어 사용(21. 12. 27. 국가인권위 결정 20 진정

0446600)²⁰⁾

이 사건 기획기사 제목의 '미친'이라는 표현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제 32 조에서 금지하는 장애인을 비하하는 데까지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 39 조 제 1 항 제 2 호에 의거해 이 사건 진정은 기각한다. 그러나 이 사건 진정에서 피진정인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기사를 작성하면서, '상식을 벗어난 사람'이라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미친'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행위는 정신장애인에 대한 부정적 관념과 편견을 유발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진정인에게 정신장애인에 대한 고정관념과 편견을 강화할 수 있는 관용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보도 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한다.

(4) 언론중재법 시정권고

- 피해 당사자가 신청해야 하는 정정보도청구 등을 직접 청구할 수 없음

- 한편 당사자 신청절차가 아니라 위원회 직권으로 조사하여 권고함(법 제 32 조)

- 언론중재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르면, 반기별 / 언론사 별로 집계하여 시정권고내역 공개

18) 제49조(차별행위) ①이 법에서 금지한 차별행위를 행하고 그 행위가 악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차별을 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②제1항에서 악의적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 차별의 고의성

2. 차별의 지속성 및 반복성

3. 차별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4. 차별 피해의 내용 및 규모

19) 하지만 장애인차별금지법상 괴롭힘 조항을 적용하기 위한 구체성이 부족하여 인권위 진정에 대한 인용비율이 높지 않다고 함(사법정책연구원, 혐오표현의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20, 178)

20) 국가인권위원회는 2020. 8. 24. '정치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 사건에서 기존 집단표시에 의한 혐오 등 표현행위는 국가인권위의 구제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변경해 구제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음(2020. 8. 24. 국가인권위 결정 20진정0052500 외1건). 본건 역시 구제대상은 되나, 해당 기획기사의 전체적인 취지나 내용(한국기자협회 357회 기자상, 23회 국제엠네스티 언론상 수상 등 참고)에 비추어 기각함.

- [23. 7. 25. 언론중재위 보도자료] “올해 시정권고 결정을 받은 인터넷 기반 매체(뉴스통신 및 인터넷신문)가 해당 기사를 수정하거나 삭제한 비율(이하 ‘수용률’)은 64.6%로 나타났다. 이 중 차별 금지 관련 수용률은 70.3%로 전체 평균보다 높았다”

(5) 방송심의규정 위반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관련

-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심의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방송내용에 대해 제재조치(해당 방송프로그램의 정정·수정 또는 중지, 방송 관계자에 대한 징계, 주의 또는 경고)를 내릴 수 있음(방송통신위원회법 제 12 조 제 10 호, 제 25 조 제 1 항 제 1 호, 방송법 제 100 조제 1 항,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3. 혐오표현 규제 관련 입법의 필요성 및 해외사례

(1) 필요성

- 판례를 분석해 보면 혐오 표현과 관련된 사건에서 명예훼손죄보다 모욕죄로 처벌되는 경향이 큼. 그러나 직접적인 욕설이나 비하와 같이 즉각적으로 모욕감을 불러일으키는 표현의 형태는 아니어서, 내용 자체는 특정 개인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모욕감을 주지는 않지만 다소 왜곡된 역사적 기원, 사회·경제적 이유를 바탕으로 특정 소수자 개인 또는 집단에 대한 불쾌감이나 편견을 드러내어 그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을 구조적으로 고착화시키는 표현의 형태인 경우 현행 법체계 안에서는 모욕죄로도 명예훼손으로도 책임을 물을 수 없음.

- 처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함이 아니라, 이러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의 고착화로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혐오표현에 대한 규제를 입법론적으로 고민해 봐야 할 것으로 생각함.

(2) 해외사례²¹⁾

1) 자유권규약 제 20 조 제 2 항

- 자유권규약 제 20 조 제 2 항은 당사국에게 “차별, 적의, 폭력의 선동이 될 민족적, 인종적, 종교적 혐오의 고취(any advocacy of national, racial or religious hatred that constitutes incitement to discrimination, hostility or violence)” 를 법률로써 금지하여야 한다고 규정

- 우리나라는 위 규정에 대한 유보없이 자유권규약을 1990 년 비준함.

2) 유럽인권협약

21) 위 연구 중 '제4장 해외 혐오 표현 관련 규정 및 판단 기준'의 일부를 발췌하여 요약함

유럽인권협약에는 혐오 표현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법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유럽인권법원은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유럽인권협약 제 10 조 그리고 권리남용 금지 조항인 동 협약 제 17 조에 근거하여 혐오 표현 관련 판례를 형성하고 있음.²²⁾

3) 미국

- 수정헌법 제 1 조 관련 표현의 자유 보호 관점 연방단위 혐오표현금지법은 없으나, 혐오표현이 실질적으로 차별로 변질되면 평등이론에 입각해 강력하게 개별법(민권법, 장애인법,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 등)에 기반해 강력히 규제하고 있고 이를 연방대법원 판례²³⁾로 확인할 수 있음.

4) 일본²⁴⁾

- 2016. 6. 3. 헤이트스피치 해소법 시행

- ‘일본 이외의 출신자에 대한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은 오로지 일본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인 자나 그 후손으로 적법하게 거주하는 것에 대한 차별적 의식을 조장하거나 유발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그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위협을 가하는 사실을 고지하거나 일본 이외의 출신자를 현저하게 비하하는 등 일본의 역외에 있는 국가 또는 지역 출신임을 이유로 일본 이외의 출신자를 지역 사회에서 배제할 것을 선동하는 부당하고 차별적인 언동을 말한다(제 2 조).

- 이에 기반해 국가의 조차강구 책임과 노력의무 부과

- 실질적 금지규정은 없는 이념법에 불과하지만, 국가차원의 최초의 차별에 반대하는 입법을 하였고 이에 행정기관 및 지자체가 혐오 표현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정당성을 부여함

III. 나가며

- 교권보호 상황과 맞물려 아동의 상황에 대해 자극적인 기사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

22) 사법정책연구원, 혐오표현의 판단기준에관한 비교법적 연구, 2020, 52

23) 1952년, 연방대법원은 *Beauharnais v. Illinois* 판결에서 “특정 인종·피부색·신념·종교를 가진 시민 집단의 부도덕성 또는 범죄, 부정(不貞), 부덕함을 묘사하여, 그 시민 집단으로 하여금 모욕 혹은 비방, 악평에 노출시키거나 평화교란이나 폭동을 발생시키는 표현물을 공공장소에서 판매·광고·출판·진열하는 것을 금지”하는 일리노이주 형법 조항을 합헌이라고 판시하였음(*Beauharnais v. Illinois*, 343 U.S. 250, 254 (1952)). 즉, 집단에 대한 비방은 수정헌법 제1조에 의하여 보호되는 표현이 아니라고 보았음.

24) 사법정책연구원, 혐오표현의 판단기준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2020, 146

- 23. 9. 1. 교육부 ‘교원의 학생지도에 관한 고시가 제정되어 시행됨. 원안에 특수교육대상자가 교원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보호장구 착용할 수 있는 조항까지도 포함되었으나. 해당 조항은 삭제됨.

- 23. 9. 15. 교원지위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기본법 개정안 국회 교육위 상임위 의결됨.

- 선생님들의 교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은 아동의 교육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맞물려 있고, 양자가 대치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점에 대한 분석이나 고려없이 아동의 행위, 보호자의 문제제기 방식 등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내용에 언론보도가 집중되고 있음.

- 그 과정에서 장애에 대한 혐오가 확대되고, 교육현장의 혼란과 대립·갈등을 가중시키는 현 상황은 근본적인 해법과 방향을 논의할 수 있는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을 저해하고 있음. 과연 교사와 아동 모두를 위한 최선이 무엇이고, 이 과정에 언론이 정말 해야 할 역할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함.

